

VER 01.03
2023. 10. 25.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2023. 10.



# 목 차

## 1. 안전관리계획 검토의뢰 개요

1.1 개요	1
1.1.1 용어 정의	1
1.1.2 매뉴얼 개요	1
1.2 CSI 구축 근거	2
1.3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3
1.4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4
1.5 검토의뢰 시기	7
1.6 검토의뢰 업무 흐름도	8
1.7 검토의뢰 안내사항	9
1.7.1 감리자의 검토 · 확인	9
1.7.2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기간	9
1.7.3 검토기관의 선정	9
1.7.4 부적정 판정에 대한 조치	9

## 2. 시공사 검토의뢰 매뉴얼

2.1 신규 검토의뢰	12
2.2 의뢰개요 작성	13
2.2.1 공사개요 입력	13
2.2.2 기관정보 및 담당자 입력	15
2.2.3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선택	16
2.2.4 심의 및 검토대상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여부 선택	17
2.2.5 의뢰개요 확인	19
2.3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입력	20
2.3.1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 시기 추가	20
2.3.2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확인 · 저장	21
2.4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22
2.4.1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전 필수 확인 사항	22
2.4.2 총괄 안전관리계획 첨부	23
2.4.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첨부	24
2.4.4 안전관리계획서 최종 확인	27
2.5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28
2.5.1 수수료 납부 절차	28
2.5.2 검토의뢰 현장정보 확인	29
2.5.3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등록	30
2.5.4 청탁금지안내 확인	32
2.5.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33
2.5.6 가상계좌 발급 요청	34
2.5.7 가상계좌 발급 요청 단계 확인	35

2.5.8 가상계좌 발급 및 검토수수료 납부 .....	36
2.5.9 수수료고지서 확인 .....	38
2.6 시공사 단계 종료 및 검토 관련 안내사항 .....	40
2.6.1 검토 관련 안내사항 .....	40
2.6.3 수수료 납부 확인 완료 후 진행상황 확인 방법 .....	41
2.7 반려 시 검토의뢰 .....	42
2.7.1 반려 시 조치방법 .....	42
2.7.2 반려사항 조치 후 진행상황 확인 방법 .....	48
2.8 변경 · 보완 검토의뢰 .....	49
2.8.1 변경 · 보완 검토의뢰 방법 .....	49
2.8.2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53
2.9 기타 .....	55
2.9.1 감리사 확인 요청 취소(검토의뢰 회수) .....	55
2.9.2 검토결과 사전 확인 방법 .....	57

### 3. 감리자 검토의뢰 매뉴얼

3.1 검토 · 확인 경로 .....	61
3.2 감리자 검토 · 확인 .....	62
3.2.1 검토 ·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	62
3.2.2 검토 · 확인서 첨부 및 확인란 체크 .....	66
3.2.3 검토 · 확인 후 승인 · 반려 .....	67

### 4. 승인기관 검토의뢰 매뉴얼

4.1 승인기관 승인 경로 .....	70
4.2 시공사 입력 사항 확인 .....	71
4.2.1 의뢰개요 확인 .....	71
4.2.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확인 .....	73
4.2.3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	76
4.3 수수료 납부 사항 확인 .....	77
4.4 감리자 검토 · 확인서 확인 .....	78
4.5 승인기관 승인 및 검토의뢰 완료 .....	79

### 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컨설팅 매뉴얼

5.1 개요 .....	81
5.2 컨설팅 요청 대상 .....	81
5.3 컨설팅 요청 방법 .....	82
5.3.1 컨설팅 요청 경로 .....	82
5.3.2 컨설팅 요청 내용 작성 .....	84
5.3.3 컨설팅 요청 내용 및 처리단계 확인 .....	86
5.4 컨설팅 답변 확인 .....	87
5.4.1 컨설팅 답변 확인 .....	87
5.4.2 컨설팅 답변 완료 시 처리단계 확인 .....	88

## 5. 부록

붙임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1·2종 시설물) .....	90
붙임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	95
붙임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96
붙임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100
붙임5	합동검토회의 Check-List .....	102
붙임6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수수료 상세 기준 .....	107

# 1. 안전관리계획 검토의뢰 개요

## 1.1. 개요

### 1.1.1. 용어 정의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뉴얼 중 법령 사항의 경우 해당 법정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외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에는 아래의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 (1) “**국토안전원**”이란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 (2) “**시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민간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 (3) “**감리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감리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 (4) “**승인기관**”이란 인·허가기관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5) “**검토기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말한다.
- (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 (6)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1.1.2. 매뉴얼 개요

본 매뉴얼은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사, 감리자, 승인기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www.csi.go.kr](http://www.csi.go.kr)) 시스템 사용 안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설명만 기술되었으며,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등 상세한 내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 CSI 구축 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안전제도의 이행력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설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5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에 따라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 받아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망의 표준화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77호)**

위탁업무	수행기관
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운영	<b>국토안전관리원</b>

### 1.3.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붙임1** 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 다. **타워크레인**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붙임2**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1.4.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붙임3**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 [2.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현장 특성 분석

###### 1)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支障物)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을 포함한다), 지반 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등을 말한다],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

###### 2)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가) 핵심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나)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영 제75조의2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작성 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가) 및 나) 외에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 요소 및 위험성을 발굴한 경우에 대한 저감 대책 마련 방안

######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신호수 배치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계획 및 손상·유실·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나)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계획

##### 다. 현장운영계획

###### 1)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비상시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나)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 주택의 건설공사는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 등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 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2)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1) 굴착, 흙막이, 발파, 향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기)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안전성 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1)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타워크레인간 충돌방지계획 및 공사장 외부 선회방지 등 타워크레인 설치·운영계획, 표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하며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각선 방향 등의 구조 부재)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
- 2) 타워크레인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 3)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 운영계획(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정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임대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자와의 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계획
- 4)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현장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1.5. 검토의뢰 시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승인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시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의 [1. 일반기준] **붙임3**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경우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경우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 건설공사의 개요], [나. 현장 특성 분석], [다. 현장운영계획],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으로 구성
- \*\* [가. 가설공사],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다. 콘크리트공사], [라. 강구조물공사], [마. 성토 및 절토공사], [바. 해체공사], [사. 건축설비공사],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로 구성

### 「건설기술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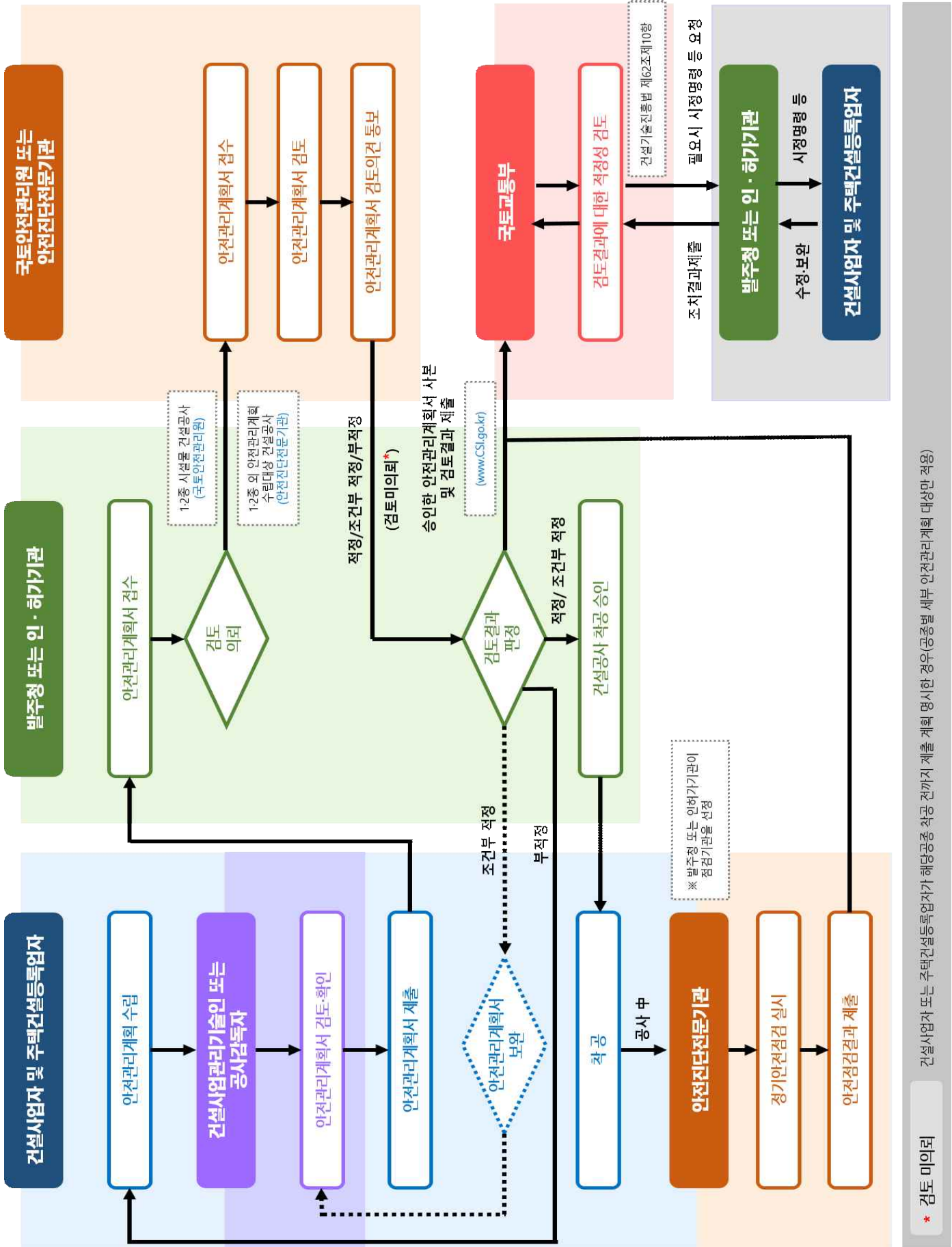
#### 1. 일반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분	작성 기준	제출 기한
1)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	<b>건설공사 착공 전까지</b>
2) 공종별 세부 안전 관리계획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	<b>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b>

-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6. 검토의뢰 업무 흐름도



## 1.7. 검토의뢰 안내사항

### 1.7.1. 감리자의 검토·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를 위해 승인기관에게 제출하기 전 미리 감리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7.2.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기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제5항

승인기관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시공사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공사에 판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정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 20일 Process**

- 시공사가 감리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승인기관이 검토기관에 검토 의뢰 → 검토기관의 검토 및 검토 의견 회신 → 승인기관의 판정결과 승인서 통보

**\*\* 판정결과 용어**

-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 1.7.3. 검토기관의 선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4항

승인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기관에 검토 의뢰할 시 **1종 및 2종시설물\***의 경우 국토안전원, 종외 시설물의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1.7.4. 부적정 판정에 대한 조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6항

승인기관은 시공사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부적정 판정 시 해당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VER 01.03
2023. 10. 25.

# 시공사 검토의뢰 매뉴얼

2023. 10.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www.csi.go.kr)의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사, 감리자, 승인기관, 국토안전원, 합동검토위원의 5개 사용자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아래 매뉴얼은 각 권한의 사용자가 본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모든 검토의뢰 업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수행 가능합니다. 업무 흐름은 아래의 9단계에 따르며, **시공사의 경우 01~04단계를 수행**합니다. 각 단계별 상세한 설명은 뒷장 매뉴얼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단계	단계명	설명
01	검토의뢰 작성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비,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전반적인 공사개요를 작성하는 단계
0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등록	현장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 선택 및 실시 시기를 입력하는 단계
03	안전관리계획서 등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는 단계
04	수수료 납부	검토의뢰 수수료를 납부하는 단계

## 2.1. 신규 검토의뢰

[CSI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안전관리계획서] → [1·2종 검토의뢰] → [신규 검토의뢰서 작성]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현장소장님으로 로그인하셨습니다.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사이트맵

□ 결과내 검색 상세검색 ▾

통합포털	0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수준평가	아차사고	건설사고	위험요소프로파일	현장점검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사용자교육	정보공동활용체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교육 일정	설계와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의뢰 검토결과 제출	안전관리계획서는? 1·2종 검토의뢰 합동검토회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관리수준평가 시스템은? 평가자료제출 평가결과열람 이의신청 맞춤형지원 수준평가 정보공개 안전관리수준평가 통계/분석	아차사고는? 아차사고	사고신고 및 조사는? 건설사고신고대장 건설사고발생신고 사고조사실시 사고사례 산업재해조사서 대장	위험요소 프로파일은? 위험요소 프로파일 평가 통계·분석	현장점검은? 현장점검 자율점검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는? 설계용역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공평가 종합평가 우수건설 사업자 등 선정 평가담당자 메뉴 평가위원 메뉴	교육 소개 수강 신청 수강 내역	정보공동활용체계 안내 공동활용 정보 API 건설안전 데이터 API 인증키 신청 공동데이터 제공 개발자 지원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자료실 건설안전 라이브러리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는? ^
- 1·2종 검토의뢰 ^
- 검토의뢰
- 처리현황 조회
- 합동검토회의 ^
-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
-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 1·2종 검토의뢰 > 검토의뢰

**검토의뢰**

처리단계: 전체 ▾

공사구분: 전체 ▾

의뢰차수: 전체 ▾

취약공종: 전체 ▾

공사종류: 전체 ▾

1·2종 세분류: - ▾

공사명: ▾

입력:

검색하기

🔔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하는 페이지입니다.

※ **검토결과 제출**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제출(메뉴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제출 > 검토결과제출)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경및보완검토의뢰서작성**은 메뉴 1·2종검토의뢰>처리현황조회>공사명검색및선택>의뢰개요의하단의 '변경·보완검토의뢰'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며됩니다

순번	공사명	의뢰기관	시공사	의뢰구분	처리단계
등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03

신규 검토의뢰서 작성

## 2.2. 의뢰개요 작성

### 2.2.1. 공사개요 입력

The screenshot shows the '공사사항' (Construction Details) form. It includes fields for project name, site location, and construction details. Numbered callouts (04-08) point to specific areas: 04 points to download links for guidelines and checklists; 05 points to the '공사명' (Project Name) search field; 06 points to the '현장 소재지' (Site Location) field with a '우편번호' (Postal Code) button; 07 points to the '공사구분' (Construction Type) and '토목·건축 구분' (Civil/Construction Type) selection options; 08 points to the '공사기간' (Construction Period) and '공사비' (Construction Cost) fields.

단계	단계명	설명
04	공지사항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안내, 합동검토회의 Check-List 등 검토의뢰를 위한 참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
05	공사명	뒷장 상세1 [공사명 입력 방법] 참고
06	현장 소재지	우편번호 버튼을 눌러 현장 소재지 입력
07	구분	해당 공사의 공사 구분(공공/민간), 토목·건축 구분을 선택하고 연면적 및 지상/지하 층수 입력
08	공사기간	해당 공사의 공사 기간과 총공사비(부가세 포함) 입력 ※ 공사명을 돋보기(🔍) 로 검색하여 선택한 경우 자동 입력됨

# 상세1

## [공사명 입력 방법]

### ■ KISCON 공사명 사용

공사명 ⓘ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radio"/> KISCON 공사명 사용	<input type="radio"/> 세움터 공사 사용	<input type="radio"/> 자체공사
인·허가 대장 공사명	<input type="text"/>	※ KISCON 공사명 미사용시 공사명을 직접입력해주세요. ※ KISCON 공사 선택		

돋보기(🔍)를 눌러 KISCON 공사대장 정보를 불러옵니다.

공사명 찾기가 불가할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먼저 공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KISCON에 공사 등록 시 해당 내용은 CSI에 익일 오전 9시 반영됩니다.

※ 예시) 22. 9. 1. KISCON 등록 시 22. 9. 2. AM9:00에 CSI에서 조회 가능

### ■ 세움터 공사명 사용

공사명 ⓘ	<input type="text"/>	<input type="radio"/> KISCON 공사명 사용	<input checked="" type="radio"/> 세움터 공사 사용	<input type="radio"/> 자체공사
인·허가 대장 공사명	<input type="text"/>	※ KISCON 공사명 미사용시 공사명을 직접입력해주세요. ※ 인·허가 대장 선택		

세움터 공사의 경우 [공사명]은 직접 입력하고, [인·허가 대장 공사명] 우측 돋보기(🔍)를 눌러 건축 인·허가 대장 정보를 불러옵니다.

### ■ 자체공사명 사용

공사명 ⓘ	<input type="text"/>	<input type="radio"/> KISCON 공사명 사용	<input type="radio"/> 세움터 공사 사용	<input checked="" type="radio"/> 자체공사
인·허가 대장 공사명	<input type="text"/>	※ KISCON 공사명 미사용시 공사명을 직접입력해주세요. ※ 자체공사 선택		

KISCON 또는 세움터 공사 모두 해당 없을 경우, [자체공사]를 선택하여 [공사명]을 수기로 입력합니다.

※ KISCON 또는 세움터 공사 대장 정보가 있으나 자체공사로 선택할 경우 접수 시 반려 조치 될 수 있음

## 2.2. 의뢰개요 작성

### 2.2.2. 기관정보 및 담당자 입력

The screenshot shows a web form with three main sections, each with a red circular icon and a number:

- 09**: 시공사 (Construction Company). Fields include: 건설업체 (Construction Company), 현장대리인 (Site Representative), and 업무담당자 (Business Officer).
- 10**: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Permitting Agency and Bidder). Fields include: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Permitting Agency and Bidder) and 담당자 (Officer).
-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Construction Management Technician or Construction Inspector). Fields include: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Construction Management Technician or Construction Inspector), 담당자 (Officer), and a checkbox for '직접감독' (Direct Supervision). Below this is a section for '해당 없음 사유' (Reasons for non-responsibility) with radio buttons for: 용도변경 (Change of Use), 신고대상 건축물 (Notified Building), 공작물 (Structure), and 해체공사 (Demolition Work).

단계	단계명	설명
09	시공사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과 업무담당자를 돋보기(🔍)로 검색
10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해당 공사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돋보기(🔍)로 검색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를 돋보기(🔍)로 검색
		발주청 직접 감독의 경우 [ <input type="checkbox"/> 직접감독 ]에 체크
		감리자 해당 없는 공사의 경우 [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에 체크하고 사유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감리자 [해당 없음] 사유</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도변경</li> <li>(2) 신고대상 건축물</li> <li>(3) 공작물</li> <li>(4) 해체공사</li> </ol> </li> <li>● <b>안내사항</b>                      상기 [해당 없음]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감리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감리자 선정 예정인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의거 <b>감리자 선정 후 검토 의뢰</b>하시기 바랍니다.                 </li> </ul>

※ 검색이 불가할 경우 해당 시공사, 감리자, 승인기관의 각 담당자가 CSI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2.2. 의뢰개요 작성

### 2.2.3.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선택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12**

- 1중시설물
- 2중시설물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경우)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중축형 리모델링
- 전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13**

- 향타 및 향발기
- 타워크레인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브라켓(bracket)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터널의 지보공(支保公)(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단계	단계명	설명
<b>12</b>	1·2중시설물 선택	<b>1·2중시설물*</b> 중 해당 사항 체크하고, 팝업창에서 세부 분류를 선택
<b>13</b>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선택	<b>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야 합니다.</b> 이때 선택하는 수립대상 항목은 <b>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b> 과 일치하여야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1·2중시설물 **붙임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붙임4**

## 2.2. 의뢰개요 작성

### 2.2.4. 심의 및 검토대상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여부 선택

단계	단계명	설명
14	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선택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굴토(구조) 심의 여부 등 선택  <b>● 심의 및 검토대상 종류</b> <b>(1) 지하안전평가</b>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상사업 예.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 <b>(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b>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대상사업 예.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 <b>(3) 굴토(구조) 심의</b> 지방자치단체 또는 승인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심의의 대상사업
15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검색	민간 공사의 경우 설계안전성검토(DFS)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테이블이 활성화되지 않음  공공 공사의 경우 뒷장 <b>상세2</b> [DFS 검토결과 '해당 없음' 선택 시 주의사항] 참고
16	비고 입력	기타 현장 특이사항 또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자가 인지하여야 하는 주요사항 등을 입력
17	<b>저장</b> 클릭	저장 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입력 가능 탭이 생성됨 ※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이전까지 입력한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수정 가능

## 상세2 [DFS 검토결과 '해당 없음' 선택 시 주의사항]

### DFS 검토결과 조회 방법

의뢰개요에 승인기관 담당자 지정 후, 상기 1~4단계의 [설계안전성검토] → [검토결과 제출] → [처리현황 조회]에서 처리단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처리단계]에 입력된 사항에 따라 DFS 해당 없음 사유를 입력

04	처리단계(상태)	DFS 해당없음 사유
1	제출(대기)	= 제출진행중
2	제출완료	= <해당 없음 선택 X>
3	<검색불가 시>	= 제출완료 후 검색 불가
4	<미제출된 건>	= 대상이나 미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5호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2019. 7. 1.이후)

상기 해당 없음 사유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일 경우에만 해당

\* 천공기(높이10m이상), 향타 및 향발기, 타워크레인 등

## 2.2. 의뢰개요 작성

### 2.2.5. 의뢰개요 확인

18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19

공사명	매뉴얼 공사		
인·허가 대상 공사명			
현장 소재지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충무공동)	<input type="button" value="지도보기"/>	
공사구분	민간		
토목·건축 구분	건축 (연면적(㎡) : 30,000, 최대층수 : 16, 지하층수 : 5)		
공사기간	2023-07-01 ~ 2025-12-31	공사비	1,000,000,000,000 원 (일조 원) (※ 부가세포함)
시공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 현장소장) 건설업체 (업무담당자 : 안전관리자)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 담당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감리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감리자)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2중시설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전기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해당 없음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해당 없음		
비고	매뉴얼 제작용 임시 공사 - 작성자 : 안전관리자    작성일시 : 2023-07-06 17:33:12		
진행상태	시공사 작성중		

20

진행상태 내역
개요다운로드
검토의뢰 수정
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span style="font-size: 24px; color: red; border: 2px solid red;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18</span>	활성화 메뉴 확인	의뢰개요 작성 후 <span style="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2px 5px;">저장</span> 을 하면,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테이블이 활성화
<span style="font-size: 24px; color: red; border: 2px solid red;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19</span>	의뢰개요 정보 확인	입력한 의뢰개요 작성 사항 중 오류 사항 검토가 필요 ※ 공사와 상이한 조건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검토의뢰 시 반려조치 될 수 있음
<span style="font-size: 24px; color: red; border: 2px solid red;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20</span>	검토의뢰 수정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이전까지 입력한 [의뢰개요], [정기 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수정 가능

## 2.3.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입력

### 2.3.1.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 · 시기 추가

단계	단계명	설명
21	도움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입력 순서 안내 버튼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불러오기	변경·보완 검토의뢰 시, 이전 차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내역을 불러오기 위한 버튼
22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항목 반영	의뢰개요에 입력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항목이 자동 반영되어 있음
23	점검명(구조물명) 입력	해당 정기안전점검 실시 대상에 대한 점검명 또는 구조물명 입력 ※ 예) 2층 시설물, T/C 2호기 등
24	점검시기 입력	현장조건을 반영하여 해당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입력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참고 <b>붙임4</b>
25	(차수 추가)	필요한 경우 점검 차수 추가를 위한 버튼
26	초기점검 입력	1·2층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일 입력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5조에 따라 실시 ※ 1·2층 시설물이 아닐 경우 초기점검 [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체크
27	추가 (정기안전점검 추가)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의 입력 완료 버튼으로 클릭 시 하단에 별도의 확정 테이블이 생성 ※ 해당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확정 처리가 되지 않아 누락될 가능성 존재

## 2.3.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입력

### 2.3.2.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확인 · 저장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목록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점검명(구조물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실시시기			삭제
		1차	2차	3차	
28 건축물 건축물 (지하상가 제외)	2중 시설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2023-06	구조체공사 초· 중기단계 시공시 2024-03	구조체공사 말기 단계 시공시 2024-10	29 삭제
	초기점검	2024-12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천공기	최초 천공 작업시 2022-11	천공 작업 말기단 계시 2023-02		삭제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2022-11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2023-02		삭제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시 2023-08	타워크레인 인상 시마다 2024-04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시 2024-10	삭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갱폼	최초 설치 완료시 2024-03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2024-10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5미터 이상 거푸 집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2023-07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2024-01		삭제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미터 이상 흙막 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2022-12	지보공 설치 말기 단계시 2023-01

30

저장 X 취소

단계	단계명	설명
28	확정 테이블 확인	- 이전 27 단계에서 <b>추가</b> 버튼을 누를 시 하단에 생성되는 확정 테이블로, 오기 사항이 없는지 확인 - <b>[의뢰개요]</b> 에 입력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과 일치하여야 함
29	삭제	오기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실시시기 삭제
30	저장 (최종 저장)	<b>저장</b> 버튼을 눌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입력을 종료 ※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이전까지 입력한 <b>[의뢰개요]</b> , <b>[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b> , <b>[안전관리계획서]</b> 수정 가능

## 2.4.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 2.4.1.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전 필수 확인 사항

- ①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 '총괄안전관리계획' 및 '세부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시스템 내 **각 항목에 맞도록 분할하여 첨부(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분할 첨부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검토 또는 변경 검토의뢰 시 문제 발생 소지가 존재하여 반려 조치 될 수 있음
- ②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7]의 **개정된 수립기준 <개정 2020. 3. 18.>** **붙임3**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 개정된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을 경우 종합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반려 조치 될 수 있음
- ③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서류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 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배 사항 존재 시 반려 조치 될 수 있음
- ④ 취약공종 합동검토회의 대상 시 **공종별로 회의자료를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합동검토회의 Check-List」 **붙임5**에 따라 회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 사항 존재 시 반려 조치 될 수 있음

#### ④의 2. 취약공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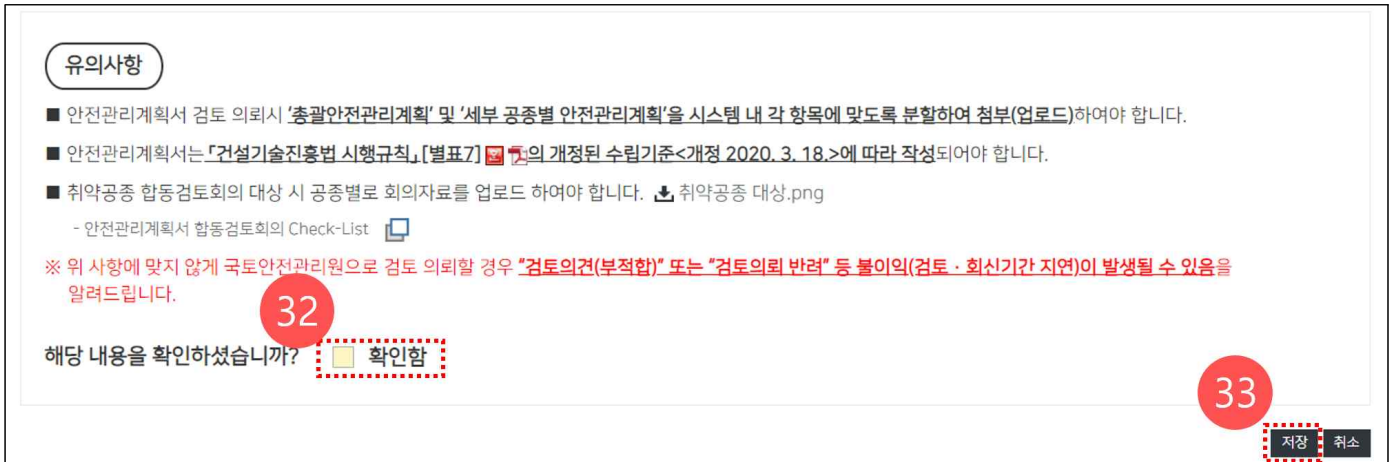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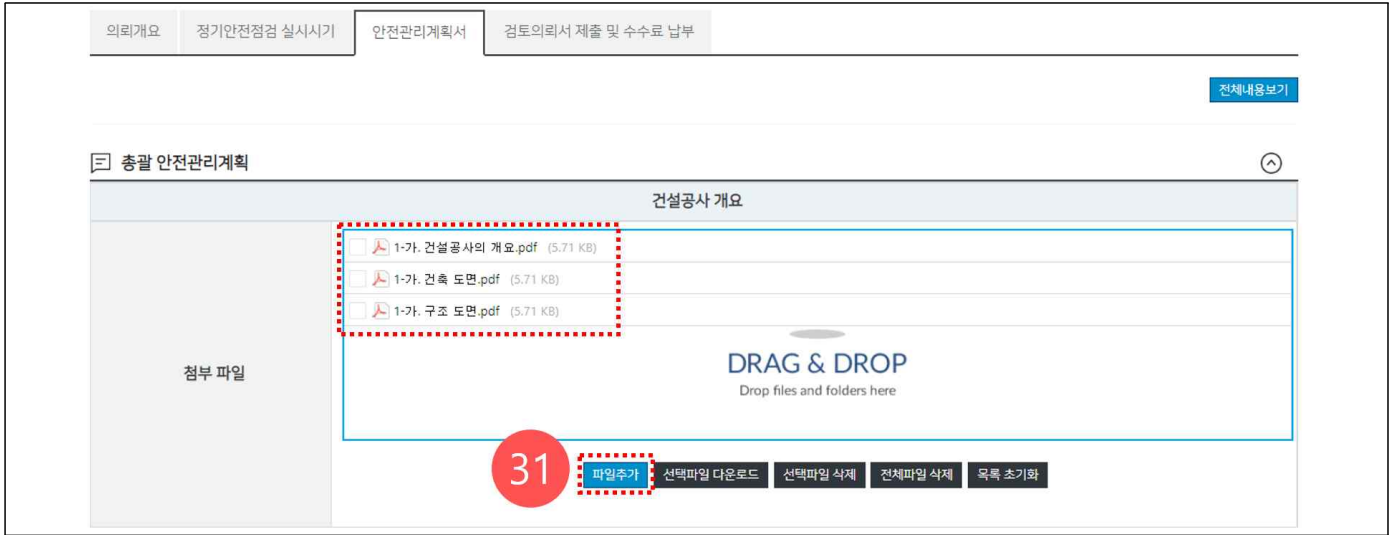
구분	대상 공종	
<b>특수교량</b>	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	
<b>굴착공</b>	굴착고 20m 이상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 산정	
<b>동바리</b>	동바리 높이 10m 이상	
<b>슬래브</b>	슬래브 두께 1m 이상	
<b>건축</b>	<b>고층</b>	50층 이상 or 높이 200m 이상
	<b>구조</b>	현수, 입체, 쉘, 스페이스 프레임, 막, 트러스, 비정형, PEB
<b>기타</b>	특허공법, 신기술 중 국토안전관리원이 취약공종으로 분류하는 대상 공종	
	기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공종	

- ⑤ **[의뢰개요]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과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수립대상**,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본문 중 [1. 총괄안전관리계획 - 다. 현장운영계획] 상의 수립대상 항목**이 각각 일치하여야 합니다.  
 ※ 미일치 시 반려조치 될 수 있음
- ⑥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반려 조치 시 **기존 접수일은 초기화**되며, **재접수일을 기준으로 순차 검토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검토 · 회신기간 지연 발생
- ⑦ 변경 검토의뢰의 경우 변경사항(전/후)-별첨으로 구성하여 **변경 전/후를 명확히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상기 내용 미반영 시 검토 · 회신기간 지연 발생

## 2.4.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 2.4.2. 총괄 안전관리계획 첨부

[가. 건설공사의 개요] [나. 현장특성 분석] [다. 현장운영계획]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첨부 단계로, **각 총괄안전관리계획 카테고리별 첨부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계	단계명	설명
31	파일추가	<b>파일추가</b> 버튼을 눌러 총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PDF 첨부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건축·구조도면 및 부재 일람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각 카테고리별로 하나의 통합된 파일로 제출하시길 권고드립니다.
32	<input type="checkbox"/> 확인함 체크	유의사항을 필히 정독 후 [ <input type="checkbox"/> 확인함]에 체크
33	저장	<b>저장</b> 버튼을 눌러 총괄 안전관리계획 업로드 완료 처리

## 2.4.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 2.4.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첨부 (1)

[가. 가설공사]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다. 콘크리트공사] [라. 강구조물공사] [마. 성토 및 절토공사] [바. 해체공사] [사. 건축설비공사]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입력 단계로, **각 공종별 입력 및 첨부 방법은 동일합니다.**

전체 공사기간 (2022-10-01 ~ 2025-01-01) 안에 해당 공종의 공사기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input checked="" type="radio"/>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 <input type="radio"/>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 <input type="radio"/> 해당사항 없음		
34	공사기간	2022-11-01 ~ 2023-03-01
	최대 굴착깊이	20.00 m
	적용공법	<input type="radio"/> 없음(오픈컷) <input checked="" type="radio"/> 있음
		흙막이벽 종류 : <input type="checkbox"/> Sheet Pile (강널말뚝) <input checked="" type="checkbox"/> H-Pile + 트류판 <input checked="" type="checkbox"/> C,I,P <input checked="" type="checkbox"/> S,C,W <input checked="" type="checkbox"/> Shotcrete (슛크리트) <input type="checkbox"/> Slurry Wall (지하연속벽) <input type="checkbox"/> C,S,R (자립식) <input type="checkbox"/> I,E,R (지주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명칭 : <input type="text"/> )
		<input checked="" type="radio"/> 순타공법
		지지형식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 Strut <input type="checkbox"/> 강관 Strut (P,P,S 포함) <input type="checkbox"/> 사각 Strut <input checked="" type="checkbox"/> Raker (경사버팀대) <input checked="" type="checkbox"/> Earth Anchor (어스앵커) <input type="checkbox"/> Soil Nail (소일네일) <input type="checkbox"/> Rock Bolt (락볼트) <input type="checkbox"/> I,P,S (프리스트레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명칭 : <input type="text"/> )
	지하수위 영향 G.L.(-) :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checked="" type="radio"/> 있음    10.00 m	
	흙막이벽 종류 : <input type="checkbox"/> Sheet Pile (강널말뚝) <input type="checkbox"/> H-Pile + 트류판 <input type="checkbox"/> C,I,P <input type="checkbox"/> S,C,W <input type="checkbox"/> Shotcrete (슛크리트) <input type="checkbox"/> Slurry Wall (지하연속벽) <input type="checkbox"/> C,S,R (자립식) <input type="checkbox"/> I,E,R (지주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명칭 : <input type="text"/> )	
	<input type="radio"/> 역타공법	
	지지형식 : <input type="checkbox"/> S,P,S <input type="checkbox"/> C,W,S <input type="checkbox"/> T,W <input type="checkbox"/> B,R,D <input type="checkbox"/> D,B,S <input type="checkbox"/> Under Form (언더폼) <input type="checkbox"/> 기타 (명칭 : <input type="text"/> )	
지하수위 영향 G.L.(-) : <input checked=""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있음 <input type="text"/> m		
<input type="checkbox"/> 합성형식		
복공여부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checked="" type="radio"/> 있음	
동시굴착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있음	
지하안전 영향성 검토 대상 여부 (최대 굴착 깊이 10m이상, 20m 이상시)	정수위(안전성계산서에 반영된 지하수위) : 10.00 m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사유 : <input type="text"/>	

단계	단계명	설명
34	해당사항 입력	당 현장 조건 및 적용 공법 등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선택 · 상세 내용 입력 ※ 누락 사항 존재 시 종합검토의견 '조건부 적정' 또는 검토의뢰 반려 조치 될 수 있음

## 2.4.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 2.4.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첨부 (2)



단계	단계명	설명
35	<input checked="" type="radio"/> 휴막이공사 (공종 해당여부 선택)	각 공종별로 해당 있을 경우 공사명에 체크하고, <b>파일추가</b>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36	<input checked="" type="radio"/> 검토제외	현장 조건 및 사유에 의해 검토의뢰가 곤란한 경우 <input checked="" type="radio"/> 검토제외에 체크하고, 해당 검토 제외 요청한 공종의 제출일과 사유를 상세 작성  ※ 검토 제외한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의 [1. 일반기준] <b>붙임3</b> 에 따라 해당공종 착공 전 제출되어야 함 ※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 제외 요청 불가함
37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사항 없음 에 체크된 경우 해당 공종은 당 현장에 해당 없는 공종이란 뜻이므로 정확히 확인하여 체크 필요  ※ 해당 있는 공종이나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사항 없음 에 체크할 경우 반려 조치 될 수 있음

## 2.4.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 2.4.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첨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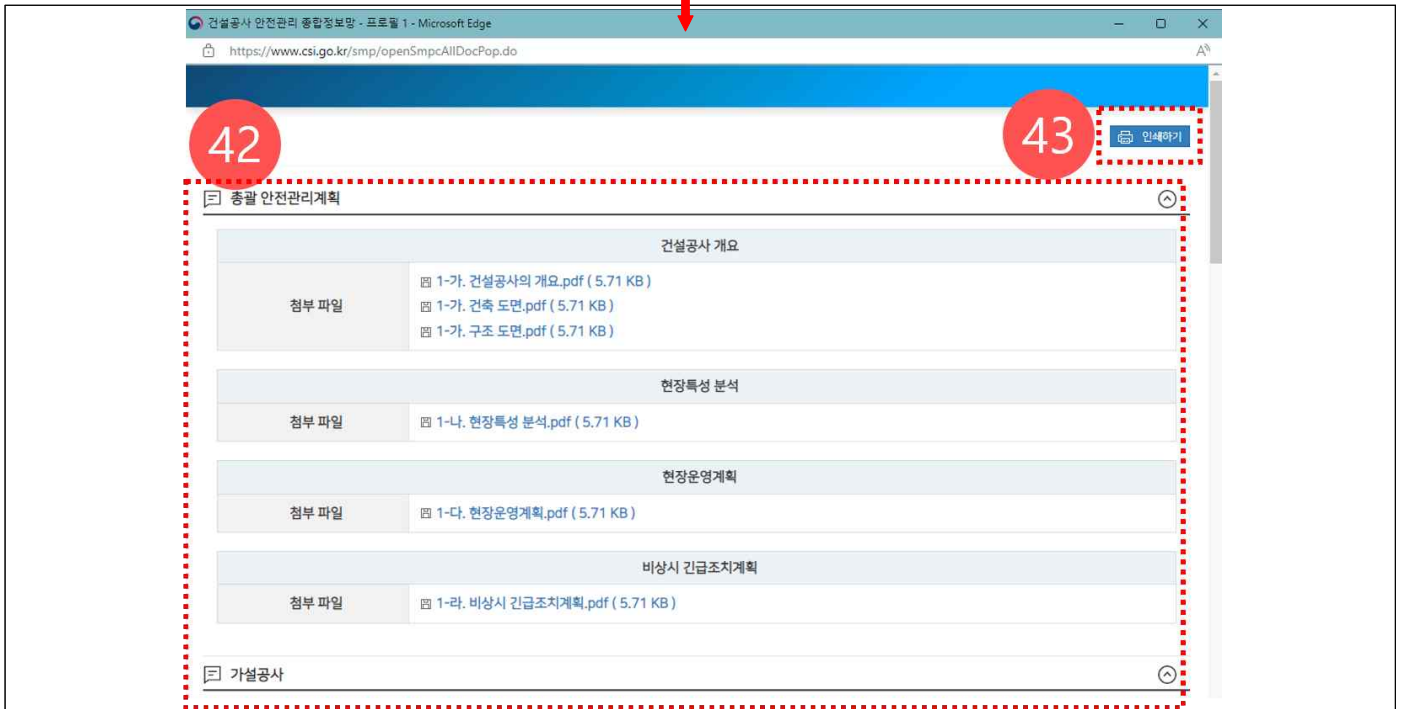
단계	단계명	설명
38	취약공종 해당여부 선택	취약공종* 해당 있을 경우 선택
39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 첨부	「안전관리계획서 합동검토회의 Check-List」 불임5를 참고하여 자료 준비하고, 해당 자료를 <b>파일추가</b> 버튼을 통해 첨부
40	<b>저장</b>	<b>저장</b> 을 눌러 상기 입력 및 첨부한 안전관리계획 사항을 저장

\* 취약공종 대상

구분	대상 공종	
특수교량	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	
굴착공	굴착고 20m 이상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 산정	
동바리	동바리 높이 10m 이상	
슬래브	슬래브 두께 1m 이상	
건축	고층	50층 이상 or 높이 200m 이상
	구조	현수, 입체, 쉘, 스페이스 프레임, 막, 트러스, 비정형, PEB
기타	특허공법, 신기술 중 국토안전관리원이 취약공종으로 분류하는 대상 공종	
	기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공종	

## 2.4.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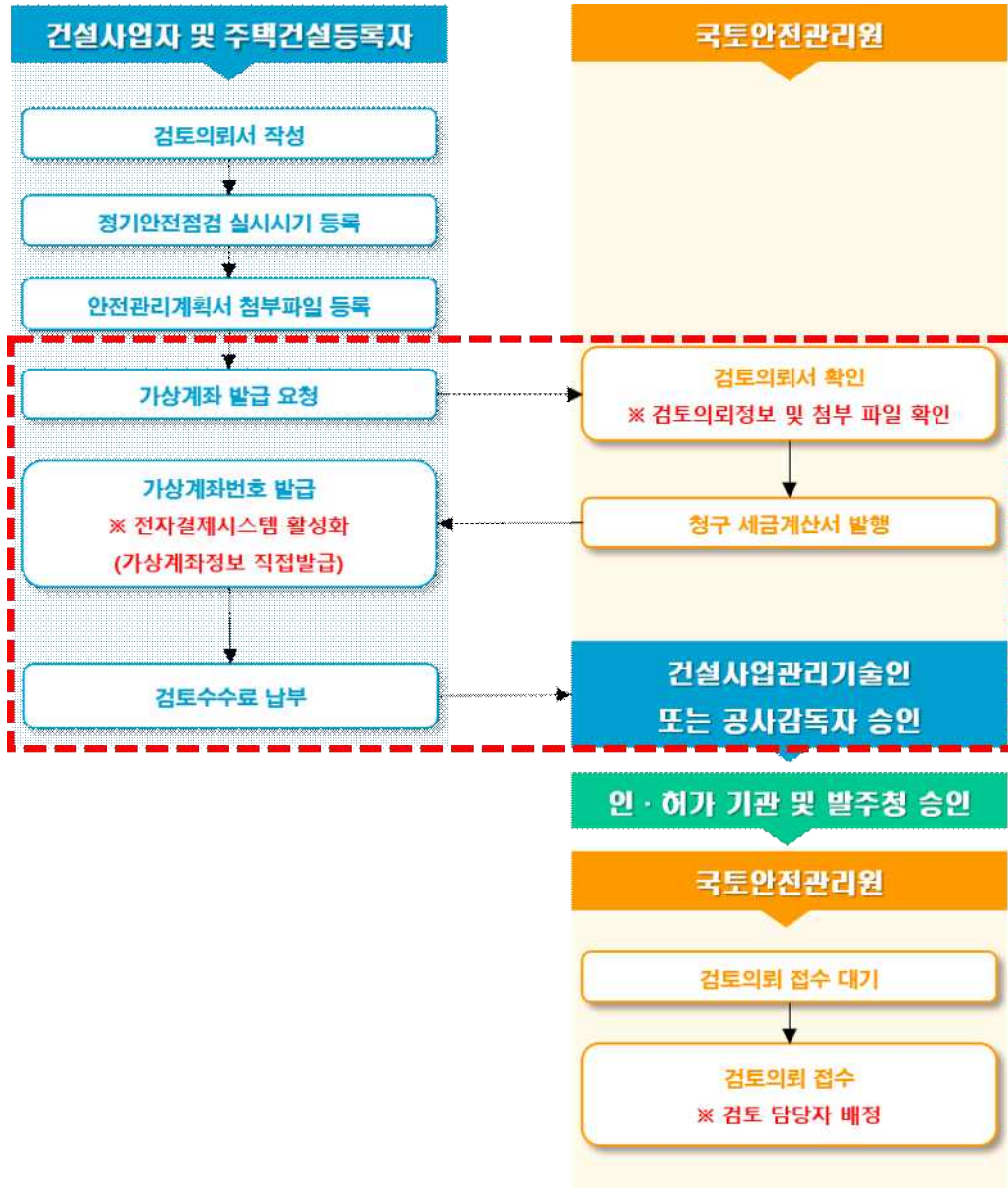
### 2.4.4. 안전관리계획서 최종 확인



단계	단계명	설명
41	전체내용보기	전체내용보기 를 클릭
42	안전관리계획서 최종 확인	전체내용보기 를 클릭하면 생성되는 팝업창에서 작성/첨부한 안전관리 계획서 최종 확인
43	인쇄하기	인쇄하기 를 클릭하여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서 전체 사항 출력 가능

## 2.5.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2.5.1. 수수료 납부 절차



※ 발급된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검토수수료 납부 후 다음 단계인 [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승인]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계명	설명
가상계좌발급요청	① [시공사] : 검토의뢰서 작성완료 → <b>가상계좌발급 요청</b> ② [국토안전관리원] : 제출된 검토의뢰서 및 첨부파일 확인 ③ [국토안전관리원] :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문자발송) ④ [시공사] : <b>전자결제시스템 활성화 (가상계좌 직접 발급)</b>
검토수수료 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① <b>검토수수료 납부버튼을 통해 가상계좌번호를 직접 발급</b> ② 해당 현장에 부여된 가상계좌정보를 통해 검토수수료 납부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승인 단계 이동

## 2.5.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2.5.2. 검토의뢰 현장정보 확인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b>44</b>	공사명	매뉴얼 공사		
	현장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충무공동)		
	공사기간	2022-10-01 ~ 2025-01-01	공사비	10,000,000,000 원
	의뢰기관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건설안전과 담당직원)		
	시공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건설업체 (업무담당자: 현장소장)		
	총괄 검토비	1,050,000 원 (VAT 포함 1,155,000 원)		
	대상공종	취약공종	공종별 검토비	
		해당 리스트가 없습니다		
	공종 총 검토비			0 원
	수수료 합계	1,050,000 원 (VAT 별도)		
	결제금액	1,155,000 원 (VAT 포함)		
	가상계좌번호	()		
	주문번호			
	납부안내	<p>[시공사] 가상계좌 발급요청 -&gt;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서 확인 완료 및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gt; [시공사] 검토 수수료 납부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단계로 진행</p> <p>① 수수료 입금 시 구매자 명을 시공사명 + 공사명키워드 (예시 OO건설 A11블럭)로 입금하시면 납부현황 파악이 용이합니다.</p> <p>② 가상계좌번호는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후, 화면 우측 하단의 <b>검토 수수료 납부(전자결제시스템)</b>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p> <p>③ 가상계좌번호 발급 후 <b>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수정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b>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p> <p>④ 세금계산서는 청구세금계산서만 발행되며,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은 055-771-46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p> <p>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p>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영수청구 구분	-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 파일없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지정되지 않은 공사입니다.

정확금지안내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가상계좌 발급 요청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수정
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b>44</b>	현장 정보 확인	수수료 납부 전 현장 정보 및 검토 수수료 최종 확인

## 2.5.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2.5.3.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등록 (1)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공사명	매뉴얼 공사		
현장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충무공동)		
공사기간	2022-10-01 ~ 2025-01-01	공사비	10,000,000,000 원
의뢰기관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 건설안전과 담당직원)		
시공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 현장소장) 건설업체 (업무담당자 : 현장소장)		
총괄 검토비	1,050,000 원 (VAT 포함 1,155,000 원)		
대상공종	취약공종	공종별 검토비	
	해당 리스트가 없습니다		
공종 총 검토비			0 원
수수료 합계	1,050,000 원 (VAT 별도)		
결제금액	1,155,000 원 (VAT 포함)		
가상계좌번호	()		
주문번호			
납부안내	<p>[시공사] 가상계좌 발급요청 -&gt;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서 확인 완료 및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gt; [시공사] 검토 수수료 납부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단계로 진행</p> <p>① 수수료 입금 시 구매자 명을 시공사명 + 공사명키워드 (예시 OO건설 A11블럭)로 입금하시면 납부현황 파악이 용이합니다.                  ② 가상계좌번호는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후, 화면 우측 하단의 <b>검토 수수료 납부(전자결제시스템)</b>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상계좌번호 발급 후 <b>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수정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b>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④ 세금계산서는 청구세금계산서만 발행되며,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은 055-771-46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p> <p></p>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영수청구 구분	-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b>45</b>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지정되지 않은 공사입니다.

정확금지안내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가상계좌 발급 요청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수정
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b>45</b>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수정	<b>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수정</b>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 등록 화면으로 이동

## 2.5.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2.5.3.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등록 (2)

단계	단계명	설명
46	담당자 정보 입력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핸드폰 정보 입력 ※ 휴대폰 정보 미입력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확히 입력
47	영수청구 구분	청구 : 입금 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48	입금 예정일 선택	입금 확정 예정일을 선택
49	사업자등록증 첨부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50	저장	저장 버튼을 눌러 입력 및 첨부한 내용 저장

## 2.5.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2.5.4. 청탁금지안내 확인

납부안내

[시공사] 계획서 업로드 -> [시공사] 수수료 납부 -> [국토안전관리원] 납부 확인 완료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단계로 진행 가능  
 ※ 수수료 입금 시 **시공사명+공사명키워드** (예시 00건설 A11블럭)로 입금하시면 납부현황 파악이 용이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02-123-1234
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010-1234-5678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manual@naver.com
영수청구 구분	청구	사업자 등록증	시공사 사업자등록증.pdf (5.85KB)
입금 예정일	2022-08-22		

**51** **청탁금지안내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 수수료 납부 확인 요청 |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수정 | 목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프트필 1 - Microsoft Edge

https://www.csi.go.kr/smp/smpcFeeQestionPop.do?popup\_yn=Y

**안전관리계획서 주의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 수립)제3항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_\_\_\_ 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0

14

20

21

**담안제출**

단계	단계명	설명
<b>51</b>	<b>청탁금지안내 확인</b>	<b>청탁금지안내 확인</b> 버튼을 눌러 청탁금지 관련 문항 <b>담안*</b>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항**

-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2.5.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2.5.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02-123-1234
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010-1234-5678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manual@naver.com
영수청구 구분	청구	첨등록증	시공사 사업자등록증.pdf (5.85KB)
입금 예정일	2022-08-22		

52

장학금지안내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가상계좌 발급 요청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수정
목록

① 버튼 클릭

② 오류가 존재하는 탭에 붉은 색 표시

③ 오류사항 상세 안내

단계	단계명	설명
52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span> 버튼을 눌러 작성 현황 검토 실행(팝업창 출력)
53	해당 위치 버튼 표출 확인	입력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치에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span> 이 생성 ▶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되는 원인을 해결하여야 함(상기 사진 참고)
54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확인</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확인</span>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 *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가상계좌 발급 요청</span> 버튼이 활성화

## 2.5.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2.5.6. 가상계좌 발급 요청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공사명	매뉴얼 공사		
현장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충무공동)		
공사기간	2022-10-01 ~ 2025-01-01	공사비	10,000,000,000 원
의뢰기관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건설안전과 담당직원)		
시공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건설업체 (업무담당자: 현장소장)		
총괄 검토비	1,050,000 원 (VAT 포함 1,155,000 원)		
대상공종	취약공종	공종별 검토비	
	해당 리스트가 없습니다		
공종 총 검토비			0 원
수수료 합계	1,050,000 원 (VAT 별도)		
결제금액	1,155,000 원 (VAT 포함)		
가상계좌번호	()		
주문번호			
납부안내	<p>[시공사] 가상계좌 발급요청 -&gt;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서 확인 완료 및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gt; [시공사] 검토 수수료 납부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단계로 진행</p> <p>① 수수료 입금 시 구매자 명을 시공사명 + 공사명키워드 (예시 OO건설 A11블럭)로 입금하시면 납부현황 파악이 용이합니다.                  ② 가상계좌번호는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후, 화면 우측 하단의 <b>검토 수수료 납부(전자결제시스템)</b>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상계좌번호 발급 후 <b>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수정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b>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④ 세금계산서는 청구세금계산서만 발행되며,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은 055-771-46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p> <p></p>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02-123-1234
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010-1234-5678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manual@naver.com
영수청구 구분	청구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34).pdf (2.77MB)
입금 예정일			

55

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지정되지 않은 공사입니다.

[정확금지안내 확인](#)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 [가상계좌 발급 요청](#) |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수정](#) | [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55	가상계좌 발급 요청	<p><b>가상계좌 발급 요청</b> 버튼을 눌러 관리원에 가상계좌 발급 요청</p> <p>※ 검토수수료 납부방법 : 매뉴얼의 「2.5.8」 참고</p> <p>※ 요청 후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원에 반려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1588-8788 &gt; 내선2 &gt; 내선1)</p>

## 2.5.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2.5.7. 가상계좌 발급 요청 단계 확인

■ 검토의뢰

처리단계	전체	공사구분	전체	의뢰차수	전체	취약공종	전체
공사종류	전체	1·2종 세분류	-	공사명	입력	검색하기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하는 페이지입니다.  
 ※ 검토결과 제출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제출(메뉴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제출 > 검토결과제출)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경및보완검토의뢰서작성은메뉴1·2종검토의뢰>처리현황조회>공사명검색및선택>의뢰개요의하단의 '변경·보완검토의뢰'버튼을클릭하여진행하시면됩니다.

순번	공사명	의뢰기관	시공사	의뢰구분	검토수 (부가세)	처리단계
1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1,155,000 원	가상계좌 발급 요청



단계	단계명	설명
56	처리단계 확인	처리단계가 [가상계좌 발급 요청] 단계로 넘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검토의뢰에서 처리단계 확인가능
57	04 수수료 납부	공사명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단계가 상기 4단계로 넘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음  시공사의 수수료 납부 및 관리원의 납부확인 처리 시 다음 단계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승인](감리자 확인 단계)로 진행

## 2.5.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2.5.8. 가상계좌 발급 및 검토수수료 납부

의뢰개요	장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검토의뢰서 접수	수수료 환불
공사명	매뉴얼 공사				
현장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송무공동)				
공사기간	2022-10-01 ~ 2025-01-01	공사비	10,000,000,000 원		
의뢰기관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건설안전과 담당직원 010-1111-1111)				
시공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010-1111-1111) 건설업체 (업무담당자: 현장소장 010-1111-1111)				
총괄 검토비	1,050,000 원 (VAT 포함 1,155,000 원)				
대상공종	취약공종		공종별 검토비		
	해당 리스트가 없습니다				
공종 총 검토비					0 원
수수료 합계			1,050,000 원 (VAT 별도)		
결제금액			1,155,000 원 (VAT 포함)		
가상계좌번호	()				
주문번호					
납부안내	<p>[시공사] 가상계좌 발급요청 -&gt;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서 확인 완료 및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gt; [시공사] 검토 수수료 납부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단계로 진행</p> <p>① 수수료 입금 시 구매자 명을 시공사명 + 공사명키워드 (예시 OO건설 A11블럭)로 입금하시면 납부현황 파악이 용이합니다.                  ② 가상계좌번호는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후, 화면 우측 하단의 <b>검토 수수료 납부(전자결제시스템)</b>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상계좌번호 발급 후 <b>의뢰개요, 장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수정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b>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④ 세금계산서는 청구세금계산서만 발행되며,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은 055-771-46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p> <p></p>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02-123-1234		
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010-1234-5678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manual@naver.com		
영수청구 구분	청구	사업자 등록증			
입금 예정일					

※ 건설사 **58** 또는 공사감독자 지정되지 않은 공사입니다.

단계	단계명	설명
<b>58</b>	검토수수료 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p><b>검토 수수료 납부</b> 버튼을 통해 가상계좌발급 <b>상세3</b></p> <p>※ 세금계산서 발행 후 검토수수료 납부(전자결제시스템)버튼 활성화                      ※ 가상계좌발급 절차 (변경 검토수수료 납부방법 동일)</p> <p>① 시공사 : 가상계좌발급 요청                      ② 국토안전관리원 : 검토의뢰서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③ 시공사 :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후 검토수수료 납부(가상계좌발급) 가능</p>



## 2.5.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2.5.9. 수수료고지서 확인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검토의뢰서 접수	수수료 환불
공사명	매뉴얼 공사				
현장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충무공동)				
공사기간	2022-10-01 ~ 2025-01-01	공사비		10,000,000,000 원	
의뢰기관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건설안전과 담당직원 010-1111-1111Q)				
시공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010-1111-1111Q) 건설업체 (업무담당자: 현장소장 010-1111-1111Q)				
총괄 검토비	1,050,000 원 (VAT 포함 1,155,000 원)				
대상공종	취약공종		공종별 검토비		
해당 리스트가 없습니다					
공종 총 검토비					0 원
수수료 합계			1,050,000 원 (VAT 별도)		
결제금액			1,155,000 원 (VAT 포함)		
가상계좌번호	(농협) 79019631906307				
주문번호	3000038268-1697590212054				
납부안내	<p>[시공사] 가상계좌 발급요청 -&gt;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서 확인 완료 및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gt; [시공사] 검토 수수료 납부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단계로 진행</p> <p>① 수수료 입금 시 구매자 명을 시공사명 + 공사명키워드 (예시 OO건설 A11블럭)로 입금하시면 납부한할 파악이 용이합니다.                  ② 가상계좌번호는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후, 화면 우측 하단의 <b>검토 수수료 납부(전자결제시스템)</b>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가상계좌번호 발급 후 <b>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수정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b>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④ 세금계산서는 청구세금계산서만 발행되며,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사항은 055-771-467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p> <p>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p>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02-123-1234		
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010-1234-5678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manual@naver.com		
영수청구 구분	청구	사업자 등록증			
입금 예정일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59 정되지 않은 공사입니다.

단계	단계명	설명
<span style="font-size: 2em; color: red; border: 2px solid red; border-radius: 50%; padding: 10px;">59</span>		버튼을 눌러 수수료고지서 다운로드 가능 <span style="background-color: #4CAF50; color: whit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상세4</span>

**상세4**

**[수수료 고지서 예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수수료 납입고지서**

고지번호	SE-2023-05705
공사명	매뉴얼 공사
수수료 (VAT 포함)	1,155,000 원
의뢰기관	발주청/인허가기관
시공사	건설업체
가상계좌	(농협)7901963190630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을 고지하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8일 (발급일)

국토안전관리원장



## 2.6. 시공사 단계 종료 및 검토 관련 안내사항

### 2.6.1. 검토 관련 안내사항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첨부 단계 중 확인 가능한 검토 관련 안내사항 팝업**입니다. 반드시 정독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청탁금지 안내

The graphic is titled "청탁금지 안내" (Anti-Request Prohibition Notice) in large, bold black font. It contains three main points, each preceded by a red checkmark icon: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공정한 검토를 위해 **검토자 비공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 검토**를 원칙
- 검토기간 단축 등의 요구**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며, 검토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 **검토가 지체되는 요인**이 됩니다.  
※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관련 안내사항

The graphic is titled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관련 안내사항" (Safety Management Plan Review Notice) in bold black font. It is presented as a list of three items, each in a separate box with a large number:

- 1** 공정한 검토를 위해 **검토자 비공개, 순차적 검토(접수일 기준)**를 원칙으로 합니다.
- 2** 검토결과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통보합니다.
- 3** **부정청탁** 목적의 **관리원 방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2.6. 시공사 단계 종료 및 검토 관련 안내사항

### 2.6.2. 수수료 납부 확인 완료 후 진행상황 확인 방법

단계	단계명	설명
59	처리현황 조회	수수료 납부 후엔 [안전관리계획서] → [1·2종 검토의뢰] → [처리현황 조회]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60	처리단계	처리단계에서 세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수료 납부 확인 완료 후 처리단계에 표시되는 진행 단계 종류

단계	단계명	설명
1	감리사 확인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단계 ※ 경우에 따라 반려조치 될 수 있음
2	발주청 확인중	승인기관 확인 단계 ※ 경우에 따라 반려조치 될 수 있음
3	검토의뢰 접수대기	검토의뢰 접수처리 완료 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담당자의 배정 전 단계 ※ 경우에 따라 반려조치 될 수 있음
4	검토의뢰 접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담당자 배정 완료 단계 ※ 시스템 상 '접수'로 표기되나 실질적인 검토는 별도로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반려조치 될 수 있음
5	검토중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담당자가 검토 진행중인 단계
6	검토완료	검토가 완료되어 승인기관 측으로 검토의견서가 발송 완료된 단계

## 2.7. 반려 시 검토의뢰

### 2.7.1 반려 시 조치방법(1)

CSI 접수 처리 절차 중 특정 사유에 의해 감리자, 승인기관, 국토안전원에게 반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 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안전관리계획서' (Safety Management Plan) interface. On the left, a sidebar menu has '1·2종 검토의뢰' (1·2 Type Review Request) selected, with a red box and green circle '01' around it. The main area has search filters for '처리단계' (Processing Stage), '공사구분' (Project Type), '의뢰차수' (Request Count), '취약공종' (Vulnerable Work Type), '공사종류' (Project Type), '1·2종 세분류' (1·2 Type Subclassification), '공사명' (Project Name), and '입력' (Input). A blue '검색하기' (Search) button is present. Below the filters, a notification states: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하는 페이지입니다.' (This is the page for requesting a review of safety management plans for 1·2 type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s to the Korea N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ission). It also includes instructions: '※ 검토결과 제출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제출(메뉴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제출 > 검토결과제출)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Submission of review results must be done through the Safety Management Plan and Review Result Submission menu) and '변경및보완검토의뢰서작성은메뉴1·2종검토의뢰>처리현황조회>공사명검색및선택>의뢰개요의하단의 '변경·보완검토의뢰'버튼을클릭하여진행하시면됩니다.' (For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review request creation, click the 'Modification/Improvement Review Request' button in the Request Overview section of the 1·2 Type Review Request > Processing Status Inquiry > Project Name Search and Selection menu). Below the notification is a table with columns: '공사명' (Project Name), '의뢰기관' (Requesting Agency), '시공사' (Construction Company), '의뢰구분' (Request Category), '검토수 (부가세포함)' (Review Fee (including tax)), and '처리단계' (Processing Stage). The first row shows '매뉴얼 공사' (Manual Project), '발주청/인허가기관' (Requesting Agency/Permitting Agency), '건설업체' (Construction Company), '신규' (New), '2,475,000 원' (2,475,000 KRW), and '발주청 반려' (Requesting Agency Rejection). A red box and green circle '02' highlight the '처리단계' column. A red box and green circle '03' highlight the '매뉴얼 공사' cell in the '공사명' column. At the bottom, there are navigation arrows and '(1 / 1 페이지) / 총 1개' (1 / 1 page) / Total 1 item.

단계	단계명	설명										
01	확인 경로	반려된 대상 공사 확인을 위한 경로는 아래와 같음 [CSI 접속] → [안전관리계획서] → [1·2종 검토의뢰] → [검토의뢰]										
02	처리단계 확인	반려 시 'OOO 반려' 식의 표현으로 기입되어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황</th> <th>처리단계 표기</th> </tr> </thead> <tbody> <tr> <td>감리자 반려 시</td> <td>감리사 반려</td> </tr> <tr> <td>승인기관 반려 시</td> <td>발주청 반려</td> </tr> <tr> <td>검토기관 반려 시(1)</td> <td>검토의뢰 반려*</td> </tr> <tr> <td>검토기관 반려 시(2)</td> <td>검토의뢰 후 반려**</td> </tr> </tbody> </table> <p>* 검토의뢰 하였으나 검토 담당자 배정 전 반려된 경우로, 주로 의뢰개요 오기입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오기입 · 안전관리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사항 존재 시 반려되는 경우임 ** 검토 담당자 배정 후 해당 담당자에 의해 반려되는 경우로, 주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내용의 오류 · 기타 반려에 해당되는 사유 존재 시 반려되는 경우임</p>	상황	처리단계 표기	감리자 반려 시	감리사 반려	승인기관 반려 시	발주청 반려	검토기관 반려 시(1)	검토의뢰 반려*	검토기관 반려 시(2)	검토의뢰 후 반려**
상황	처리단계 표기											
감리자 반려 시	감리사 반려											
승인기관 반려 시	발주청 반려											
검토기관 반려 시(1)	검토의뢰 반려*											
검토기관 반려 시(2)	검토의뢰 후 반려**											
03	공사명 클릭	공사명을 클릭하여 조치를 위한 페이지로 이동										

## 2.7. 반려 시 검토의뢰

### 2.7.1 반려 시 조치방법(2)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발주청 확인
공사명	매뉴얼 공사			
인·허가 대장 공사명				
현장 소재지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충무공동)			📍 지도보기
공사구분	민간			
토목·건축 구분	건축 (연면적(m <sup>2</sup> ): 30,000, 최대층수: 16, 지하층수: 10)			
공사기간	2022-10-01 ~ 2025-01-01	공사비	10,000,000,000 원 (일백억 원) (** 부가세포함)	
시공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건설업체 (업무담당자: 안전관리자)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담당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감리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자)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2중시설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향타 및 향발기 타워크레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지하안전평가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해당 없음			
비고	매뉴얼 제작용 임시 공사 - 작성자: 현장소장    작성일시: 2022-08-04 13:31:44			
진행상태	발주청 반려			
진행상태 내역		📄 개요다운로드 <b>검토의뢰 수정</b> 📄 목록		
□ 검토의뢰 반려사유				
04	반려사유	반려사유	반려일시	2022-12-12 16:55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별표7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 재작성이 필요				

단계	단계명	설명
04	반려사유 확인·조치	공사명 클릭 후 맨 하단에서 반려사유 확인 가능 ※ 해당 반려사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령, 상기의 예시 반려사유처럼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별표7을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의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일괄 수정 후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탭에서 조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05	검토의뢰 수정	검토의뢰 수정 버튼 클릭 시 처리단계가 [시공사 작성중] 상태로 전환

## 2.7. 반려 시 검토의뢰

### 2.7.1 반려 시 조치방법(3)

**의뢰개요 입력**

공사명 : 매뉴얼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절차 안내 (※ ■ 색상은 미처리 표시)

01 검토의뢰 → 0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등록 → 03 안전관리계획서 등록 → 04 수수료 납부 → 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승인 → 06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승인 → 07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접수 → 0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중 → 0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완료

06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발주청 확인

[전체내용보기](#)

---

총괄 안전관리계획 저장완료

건설공사 개요

첨부 파일

1-가. 건설증서의 개요.pdf (5.71 KB)

1-가. 건축 도면.pdf (5.71 KB)

1-가. 구조 도면.pdf (5.71 KB)

DRAG & DROP

Drop files and folders here

[파일추가](#)    [선택파일 다운로드](#)    [선택파일 삭제](#)    [전체파일 삭제](#)    [목록 초기화](#)

단계	단계명	설명
06	반려사항 반영하여 수정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에서 반려 사유를 반영하여 수정 ※ 수정 방법은 매뉴얼의 「2.2」, 「2.3」, 「2.4」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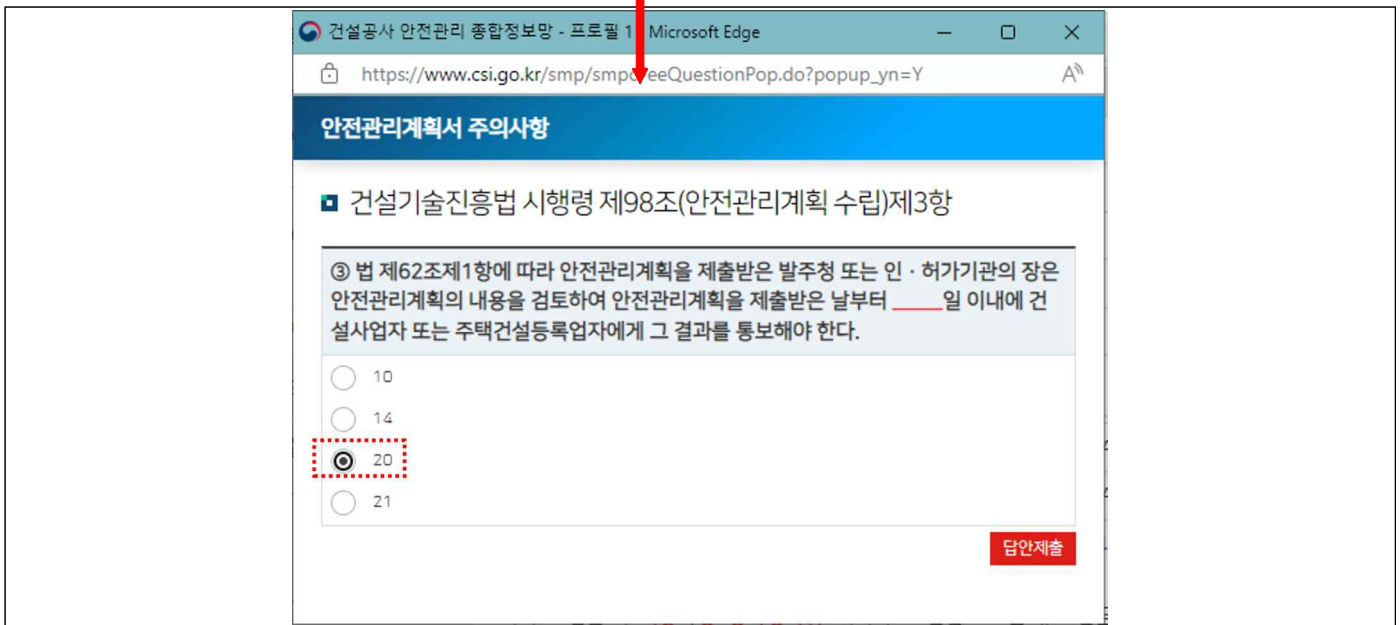
## 2.7. 반려 시 검토의뢰

### 2.7.1 반려 시 조치방법(4)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02-123-1234
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010-1234-5678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manual@naver.com
영수청구 구분	정구	사업자 등록증	☐ 시공사 사업자등록증.pdf (108.78KB)
입금 예정일	2022-12-		

**07**

청탁금지안내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요청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수정
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b>07</b>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청탁금지안내 확인</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청탁금지안내 확인</span> 버튼을 눌러 청탁금지 관련 문항 <b>답안*</b> 제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항**

- 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2.7. 반려 시 검토의뢰

### 2.7.1 반려 시 조치방법(5)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02-123-1234
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010-1234-5678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manual@naver.com
영수청구 구분	청구	사업자 등록증	☐ 시공사 사업자등록증.pdf (108.78KB)
입금 예정일	2022-12-13		

08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신 경우 이미지 위치에 버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01

검토의뢰 작성

0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등록

03

안전관리계획서 등록

04

수수료 납부

09

- 의뢰개요 입력
  - 의뢰개요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입력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서 입력
  - 안전관리계획서 문서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10

단계	단계명	설명
08	<input type="button" value="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input type="button" value="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버튼을 눌러 작성 현황 검토 실행(팝업창 출력)
09	해당 위치 버튼 표출 확인	입력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치에 <input type="button" value="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이 생성 ▶ 해당 버튼 생성 원인 (1) 07 단계에서 <input type="button" value="청탁금지안내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2) 의뢰개요에 누락 사항이 존재할 경우 (3)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입력이 누락된 경우 (4)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및 입력 사항 중 누락사항이 존재할 경우
10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 * <input type="button" value="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요청"/> 버튼이 활성화

## 2.7. 반려 시 검토의뢰

### 2.7.1 반려 시 조치방법(6)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02-123-1234
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010-1234-5678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manual@naver.com
영수청구 구분	청구	사업자 등록증	시공사 사업자등록증.pdf (5.85KB)
입금 예정일	2022-08-22		

**11**

[청탁금지안내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요청](#)
[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수정](#)
[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b>11</b>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요청	해당 버튼을 눌러 반려 조치 완료 및 '감리사 확인중' 단계로 진행

## 2.7. 반려 시 검토의뢰

### 2.7.2. 반려사항 조치 후 진행상황 확인 방법

단계	단계명	설명
12	처리현황 조회	반려사항 조치 완료 후엔 [안전관리계획서] → [1·2종 검토의뢰] → [처리현황 조회]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13	처리단계	처리단계에서 세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려사항 조치 완료 후 처리단계에 표시되는 진행 단계 종류**

단계	단계명	설명
1	감리사 확인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단계 ※ 경우에 따라 반려조치 될 수 있음
2	발주청 확인중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확인 단계 ※ 경우에 따라 반려조치 될 수 있음
3	검토의뢰 접수대기	검토의뢰 접수처리 완료 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담당자의 배정 전 단계 ※ 경우에 따라 반려조치 될 수 있음
4	검토의뢰 접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담당자 배정 완료 단계 ※ 시스템 상 '접수'로 표기되나 실질적인 검토는 별도로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반려조치 될 수 있음
5	검토중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담당자가 검토 진행중인 단계
6	검토완료	검토가 완료되어 승인기관 측으로 검토의견서가 발송 완료된 단계

## 2.8. 변경·보완 검토의뢰

### 2.8.1. 변경·보완 검토의뢰 방법(1)

변경·보완 제출은 검토의뢰 완료 이후 가능하며, 안전관리계획서의 변경·보완 시에는 해당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안전관리계획서' (Safety Management Plan) system interface. The '처리현황 조회' (Current Status Search) section is active. A red box highlights the '처리현황 조회' menu item in the left sidebar, labeled '01'. The search criteria include '접수완료일자' (Received Date), '검토제외 제출예정월' (Excluded Review Submission Month), '처리단계' (Processing Stage), '의뢰차수' (Request Count), '취약공종' (Vulnerability Type), and '접수번호' (Request Number). Below the search criteria, a table displays the search results. A red box highlights the '공사명' (Work Name) column in the first row, labeled '02'. The table header includes '순' (No.), '공사명', '의뢰기관', '시공사', '의뢰구분', '접수번호', '접수완료일자', '검토제외 제출예정월', and '처리단계'. The first row shows '1',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SD-2022-17180', '2022-12-13', '2023-02', and '검토완료'.

단계	단계명	설명
01	처리현황 조회	[안전관리계획서] → [1.2종 검토의뢰] → [처리현황 조회]의 경로에서 변경·보완 검토 의뢰가 가능
02	공사명 클릭	공사명을 클릭

## 2.8. 변경·보완 검토의뢰

### 2.8.1. 변경·보완 검토의뢰 방법(2)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 / 발주청 확인	검토의견서
공사명	매뉴얼 공사					
인·허가 대장 공사명						
현장 소재지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충무공동)					지도보기
공사구분	민간					
토목·건축 구분	건축 (연면적(㎡) : 30,000, 최대층수 : 16, 지하층수 : 10)					
공사기간	2022-10-01 ~ 2025-01-01	공사비	10,000,000,000 원 (일백억 원) (* 부가세포함)			
시공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 현장소장) 건설업체 (업무담당자 : 안전관리자)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 담당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감리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감리자)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2층시설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작업발판 밀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지하안전평가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해당 없음					
비고	매뉴얼 제작용 임시 공사 · 작성자 : 현장소장    작성일시 : 2022-08-04 13:31:44					03
진행상태	검토완료					

공사개요 수정 내역
진행상태 내역
개요다운로드
변경·보완 검토의뢰
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03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보완 검토의뢰 시작

## 2.8. 변경·보완 검토의뢰

### 2.8.1. 변경·보완 검토의뢰 방법(3)

**의뢰개요 입력**

공사명 : 매뉴얼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절차 안내 (※ ■ 색상은 미처리 표시)

01 검토의뢰 작성 → 0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등록 → 03 안전관리계획서 등록 → 04 **수수료 납부** → 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승인 → 06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승인 → 07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접수 → 08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중 → 09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완료

재검토 1차(..)

의뢰개요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 안전관리계획서

**도움말**

**공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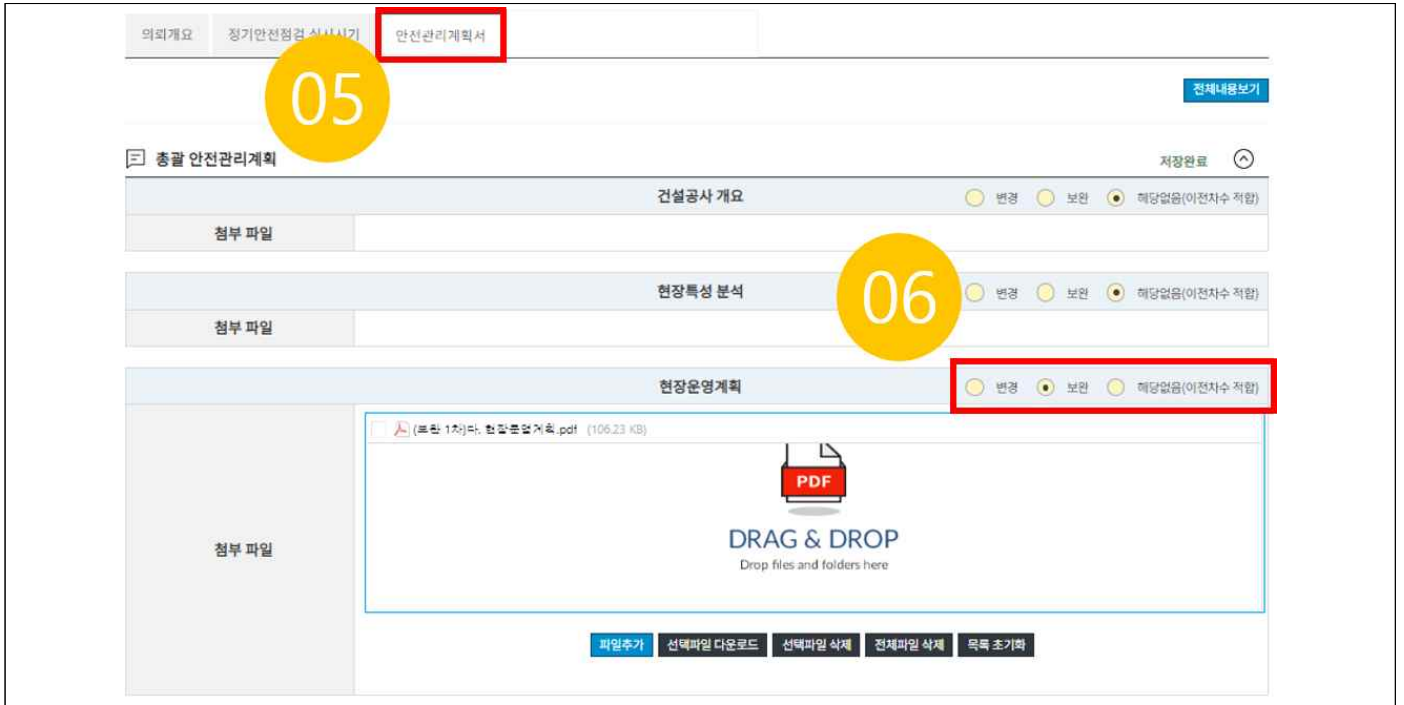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이용안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안내(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안전관리계획서 합동검토회의 Check-List

공사명	매뉴얼 공사	<input type="radio"/> KISCON 공사명 사용	<input type="radio"/> 세움터 공사 사용	<input checked="" type="radio"/> 자체공사
인·허가 대상 공사명		※ KISCON 공사명 미사용시 공사명을 직접입력해주세요. ※ 자체공사 선택		
현장 소재지	52852 우편번호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송우공동)	상세주소 :		
공사구분	<input type="radio"/> 공공 (SOC) <input checked="" type="radio"/> 민간			
토목·건축 구분	<input type="radio"/> 토목 <input checked="" type="radio"/> 건축 <input type="radio"/> 토목+건축			
	연면적(㎡) :	30,000	최대층수 [ 지상 :	16 지하 : 10 ]

단계	단계명	설명
04	변경사항 수정	[의뢰개요]와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반영하여 입력

## 2.8. 변경·보완 검토의뢰

### 2.8.1. 변경·보완 검토의뢰 방법(4)



단계	단계명	설명
05	안전관리계획서 탭	변경·보완에 해당되는 안전관리계획서 첨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탭을 클릭
06	변경·보완 선택	1) 변경된 안전관리계획서 첨부 시 <input type="radio"/> 변경 을 선택하고, 이전 차수 검토에서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에 대한 조치 결과로서 보완 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할 시 <input type="radio"/> 보완 을 선택 2) 자료 첨부 방법 및 정보 수정 방법은 매뉴얼 23~27p와 같음

※ 이전 차수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을 시  해당없음(이전차수 적합) 버튼에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음

\* '변경' 건이나 '보완'으로 제출하거나, 해당되는 공종이 아닌 다른 공종에 잘못된 서류를 첨부할 시 추후 국토안전원 검토 단계에서 반려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2.8. 변경·보완 검토의뢰

### 2.8.2.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1)

안전관리계획서

1·2종 검토의뢰

07

처리단계: 전체, 공사구분: 전체, 의뢰차수: 변경, 취야공종: 전체

공사종류: 전체, 1·2종 세분류: -, 공사명: 입력, 검색하기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하는 페이지입니다.

※ 검토결과 제출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제출(메뉴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제출 > 검토결과제출)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경및보완검토의뢰서작성은메뉴 1·2종검토의뢰>처리현황조회>공사명검색및선택>의뢰개요의하단의 '변경·보완검토의뢰'버튼을클릭하여진행하시면됩니다.

08

번호	공사명	의뢰기관	시공사	의뢰구분	검토수수료 (부가세포함)	처리단계
1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변경(1차)	660,000 원	시공사 작성중

(1 / 1 페이지) / 총 1개

단계	단계명	설명
07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경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위해 아래의 경로로 이동 [CSI 접속] → [안전관리계획서] → [1·2종 검토의뢰] → [검토의뢰]
08	공사명 클릭	공사명을 클릭

## 2.8. 변경·보완 검토의뢰

### 2.8.2.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2)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공사명	매뉴얼 공사		
현장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충무공동)		
공사기간	2022-10-01 ~ 2025-01-01	공사비	10,000,000,000 원
의뢰기관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건설안전과 담당직원)		
시공사	건설업체 (담당자: 현장소장)		
총괄 검토비	0 원 (VAT 포함 0 원)		
<b>09</b> 대상공종	취약공종	공종별 검토비	
가설공사	-	600,000 원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굴착공-굴착고 20m이상 굴착공사	0 원	
콘크리트공사 (PC 구조 포함)	-		
공종 총 검토비		600,000 원	
수수료 합계	600,000 원 (VAT 별도)		
결제금액	660,000 원 (VAT 포함)		
납부안내	<p>[시공사] 계획서 업로드 -&gt; [시공사] 수수료 납부 -&gt; [국토안전관리원] 납부 확인 완료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단계로 진행 가능                      ※ 수수료 입금 시 <b>시공사명+공사명키워드</b> (예시 OO건설 A11블럭)로 입금하시면 납부현황 파악이 용이합니다.</p> <p></p>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02-123-1234
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010-1234-5678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manual@naver.com
영수청구 구분	-	사업자 등록증	
<b>10</b>	<p>    </p>		

단계	단계명	설명
<b>09</b>	수수료 확인	변경 검토의뢰 시 검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수료 산정 기준은 <b>붙임6</b> 참고 바람
<b>10</b>	가상계좌 발급 및 검토의뢰서 제출	가상계좌 발급 및 검토의뢰서 제출 방법은 매뉴얼 28~38p와 같음

## 2.9. 기타

### 2.9.1. 감리사 확인 요청 취소(검토의뢰 회수)(1)

시공사는 감리사 확인 요청 단계에서 아래의 방법에 따라 검토의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계	단계명	설명
01	처리현황 조회	감리사 확인 요청 취소는 [안전관리계획서] → [1.2종 검토의뢰] → [처리현황 조회]의 경로에서 가능함
02	공사명 클릭	'감리사 확인중' 단계에 있는 공사명 클릭

## 2.9. 기타

### 2.9.1. 감리사 확인 요청 취소(검토의뢰 회수)(2)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 / 발주청 확인
공사명	매뉴얼 공사			
인·허가 대상 공사명				
현장 소재지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충무공동)			
공사구분	민간			
토목·건축 구분	건축 (연면적(㎡) : 30,000, 최대층수 : 16, 지하층수 : 10)			
공사기간	2022-10-01 ~ 2025-01-01	공사비	10,000,000,000 원 (일백억 원) (※ 부가세포함)	
시공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 현장소장) 건설업체 (업무담당자 : 안전관리자)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 담당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감리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감리자)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2중시설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작업발판 일체형 기둥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5미터 이상인 기둥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여 복합형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지하안전평가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해당 없음			
비고	매뉴얼 제작용 임시 공사 - 작성자 : 현장소장    작성일시 : 2022-08-04 13:31:44			
진행상태	감리사 확인중			

03

개요다운로드 ✓ 감리사 확인중 요청 취소 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03	<span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5px;">✓ 감리사 확인중 요청 취소</span>	해당 버튼을 눌러 감리사 확인 요청 취소함. 취소 시 처리 단계는 '시공사 작성중'으로 돌아가 전체 수정이 가능

## 2.9. 기타

### 2.9.2. 검토결과 사전 확인 방법(1)

국토안전원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승인기관에게 회신합니다. 발주청은 검토의견서를 받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판정 결과를 시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검토결과 사전 확인'은 상기 판정 결과의 발급 및 통보 전, 시공사가 미리 CSI에서 검토결과와 검토의견서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1-2종 검토의뢰

01

처리현황 조회

접수완료일자: yyyy-mm-dd ~ yyyy-mm-dd

검토제외 제출예정일: yyyy-mm ~ yyyy-mm

처리단계: 전체

의뢰차수: 전체

취역공종: 전체

접수번호: SD - 2022 - 00001

공사명: 입력

검색하기

현장소장(건설업체)님이 검토의뢰한 안전관리계획서 목록입니다.

순번	공사명	의뢰기관	시공사	의뢰구분	접수번호	접수완료일자	검토제외	처리단계
1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변경(1차)	SD-2022-17181	2022-12-13	2023-01	검토완료

02

03

( 1 / 1 페이지 ) / 총 1개

단계	단계명	설명
01	처리현황 조회	검토결과 사전 확인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 [1·2종 검토의뢰] → [처리현황 조회]의 경로로 이동
02	처리단계 확인	처리단계가 '검토완료'로 되어있을 시 검토결과 사전 확인이 가능 ※ 처리단계가 '검토완료'인 경우 국토안전원이 승인기관에 검토의견서를 이미 발송 완료한 상태인 점 참고 바랍니다.
03	공사명 클릭	공사명을 클릭

## 2.9. 기타

### 2.9.2. 검토결과 사전 확인 방법(2)

**조회**

공사명 : 매뉴얼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절차 안내 (※ ■ 색상은 미처리 표시)

변경 재검토 1차(2022.12.13) ▼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 / 발주청 확인	검토의견서
------	-------------	---------	-------------------	-------------	-------

검토의견서	<a href="#">안전관리계획서(변경)(매뉴얼 공사) 재검토(1차) 의견서.pdf (196.79KB)</a>
최종검토의견서	<a href="#">안전관리계획서(변경)(매뉴얼 공사) 재검토(1차) 의견서.pdf (108.78KB)</a>

05

업로드된 검토의견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의견이며, 판정결과 승인서가 아닙니다.  
 판정결과 승인서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발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 최종검토의견서에 업로드된 검토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참고사항  
 유의사항  
 권고사항

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04	검토의견서 탭	검토의견서 확인을 위해 검토의견서 탭을 클릭
05	최종검토의견서 확인	최종검토의견서 테이블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전 확인

VER 01.03
2023. 10. 25.

# 감리자 검토의뢰 매뉴얼

2023. 10.



###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 감리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www.csi.go.kr)의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사, 감리자, 승인기관, 국토안전원, 합동검토위원의 5개 사용자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아래 매뉴얼은 각 권한의 사용자가 본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모든 검토의뢰 업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수행 가능합니다. 업무 흐름은 아래의 9단계에 따르며, **감리자의 경우 05단계를 수행**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뒷장 매뉴얼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단계	단계명	설명
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감리자가 검토·확인서를 첨부하는 단계

### 3.1. 검토·확인 경로

[CSI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안전관리계획서] → [1·2종 검토의뢰] → [검토·확인이 필요한 공사명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CSI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for '로그아웃' and '사이트맵'. Below the search bar is a horizontal menu with various categories. The '안전관리계획서' (Safety Management Plan) category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labeled '01'. Under this category, the '1·2종 검토의뢰' (Request for Review of 1st and 2nd Type) op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labeled '02'. Below the menu, there is a table of project names. The first row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labeled '03' and contains the text '매뉴얼 공사' (Manual Work).

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결과내 검색 상세검색

로그아웃 사이트맵

통합포털	설계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수준평가	아차사고	건설사고	위험요소프로파일	현장점검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사용자교육	정보공동활용체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용? 교육 일정	설계의 안전관리 검토	안전관리계획서는? 1·2종 검토의뢰	안전관리수준평가 시스템은? 평가자료제출 평가결과열람 이의신청 맞춤형지원 수준평가 정보공개 안전관리수준평가 통계/분석	아차사고는? 아차사고	사고신고 및 조사는? 건설사고신고대장 건설사고발생신고 사고조사실시 사고사례	위험요소 프로파일은? 위험요소 프로파일 위험요소 위험성 평가 통계·분석	현장점검은? 현장점검 자율점검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는? 설계용역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공평가 종합평가 우수건설 사업자 등 선정 평가담당자 메뉴 평가위원 메뉴	교육 소개 수강 신청 수강 내역	정보공동활용체계 안내 공동활용 정보 API 건설안전 데이터 API 인증키 신청 공통데이터 제공 개발자 지원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물고담하기 자료실 건설안전 라이브러리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

※ 검토결과 제출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제출(메뉴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제출 > 검토결과제출)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경및보완검토 의뢰서작성은 메뉴 1·2종 검토의뢰 > 처리현황조회 > 공사명 검색 및 선택 > 의뢰개요의 하단의 '변경·보완검토의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번	공사명	의뢰기관	사공사	의뢰구분	검토수수료 (부가세포함)	처리단계
03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2,475,000 원	감리사 확인중

( 1 / 1 페이지 ) / 총 1개

## 3.2. 감리자 검토·확인

### 3.2.1. 검토·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단계	단계명	설명
04	감리/발주청 확인	감리자가 검토 확인서를 첨부하는 단계입니다.
05		 검토·확인서 양식 버튼을 눌러 hwp 양식 다운로드 ※ 검토·확인서 작성 방법은 검토 확인서 예시(Sample) <a href="#">상세1</a> 참고

**상세1**

[검토·확인서 작성 방법 예시(1)]

[ S A M P L E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확인서(4차)				
확인자	명칭(상호)	OOO건축사사무소	전화번호	010-XXXX-XXXX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YYMMDD
		<input type="checkbox"/> 공사감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000		
공사명	OOO 신축공사			
현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000			
공사기간	실착공예정일	2022. 3.	준공예정일	2024. 4.
공사금액	13,400,000,000원			
검토·확인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임 / <input type="checkbox"/> 전부 서류 참조			
<p>「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 년 8 월 1 일</p> <p style="text-align: right;">검토·확인자    총괄감리원    홍길동 (인)</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서울시 강남구청장) 귀하</p>				
[불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자) 검토 의견서. 1부.				

검토·확인서 갑지의 경우 위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검토·확인자의 서명을 반드시 포함

**상세1**

[검토·확인서 작성 방법 예시(2)]

**( S A M P L E )**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조치 결과	비 고
가. 가설공사	※ 이전검토 완료	적 정	재검토 2차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이전검토 완료	적 정	재검토 1차
다. 콘크리트공사	- 작업반편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성 계산서, 제작도면	검토 미의뢰	첨부 참조
	- 높이5m이상 벽체 거푸집(발전기실, 펌프실)의 축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 시공 상세도면 및 콘크리트 타설계획 보완		
	- 전이구조물 시공 시 하부지지 슬래브에 대한 안전성검토 및 시공 상세도면 보완		
	- 전이구조물 콘크리트 축압 구조검토 및 타설계획(분할 타설 등) 보완		
	- 중차량 이동 및 작업구간 하부슬래브의 안전성 확보방법 및 그 결과에 따른 보강 상세도면 보완		
	- E/V 기계실 바닥 슬래브 설치 계획 및 시공 상세도면	검토 미의뢰	
라. 강구조물공사	- 해당사항 없음		
마. 성토 및 절토공사	- 미제출(해당공종 착공 전 제출 예정)	검토 미의뢰	
바. 해체공사	- 해당사항 없음		
사. 건축설비공사	※ 이전검토 완료	적 정	재검토 3차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이전검토 완료	적 정	재검토 3차

검토·확인서 내용은 각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공종별로 검토 내용(범위)와 조치 결과(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상세1**

[검토·확인서 작성 방법 예시(3)]

[ S A M P L E ]

**첨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견서(신규, 1차)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비 고
1. 작업방안 일체형거푸집의 안전성 계산서, 제작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공종 착공 전 제출예정(22년 9월)</li> </ul>	검토 미의뢰
2. 높이5m이상 벽체 거푸집(받전기실, 펌프실)의 측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 시공 상세도면 및 콘크리트 타설계획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제안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자, 검토자, 설계자 자격사항</li> <li>- 콘크리트 측압 검토</li> <li>- 벽체 유로폼, 보축면 유로폼 검토</li> </ul> </li> <li>시공상세도</li> <li>행렬공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벽구간 및 단차구간 결합부 계획</li> <li>- PC 데크 끊어지기 및 결합부 계획</li> <li>- 지하층 행렬공사계획 및 쉐시포트시공계획(RC부)</li> </ul> </li> <li>콘크리트 타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콘크리트 공사 flow</li> <li>- 지상층 분배기 사용계획</li> <li>- 보온양생계획(하절기, 동절기)</li> </ul> </li> </ul>	적정
3. 전이구조물 시공 시 하부지지 슬래브에 대한 안전성검토 및 시공 상세도면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제안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자, 검토자, 설계자 자격사항</li> </ul> </li> <li>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개요, 적용기준 및 표준, 사용재료, 실제조건</li> </ul> </li> <li>구조검토 결과 : 내력파 범위가 허용범위 이내</li> <li>3차원해석용 활용한 구조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슬래브 T=250, 보 H=900</li> </ul> </li> <li>실제도면, 시험성적서, 설계자료 등 확인</li> </ul>	적정
4. 전이구조물 콘크리트 측압 구조검토 및 타설계획(분할 타설 등)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조제안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자, 검토자, 설계자 자격사항</li> </ul> </li> <li>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개요, 적용기준 및 표준, 사용재료, 실제조건</li> </ul> </li> <li>구조검토 결과 : 내력파 범위가 허용범위 이내</li> <li>구조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체유로폼(아파트등 지하PT층 벽체기준 유로폼 60L / T=400, H=5,700 이하)</li> </ul> </li> <li>실제도면 및 표준도</li> <li>보 거푸집 떨어짐 방지대책</li> <li>분할타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기초+주차장기초 끊어지기 등</li> </ul> </li> </ul>	적정
5. 중차량 이동 및 작업구간 하부슬래브의 안전성 확보방법 및 그 결과에 따른 보강 상세도면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콘크리트 타설 시 지하 및 지상층 slab 하부 구조물 보강대책</li> <li>쉐시포트 계산서</li> </ul>	적정
6. 전이구조물 시공 시 하부지지 슬래브에 대한 안전성검토 및 시공 상세도면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공종 착공 전 제출예정(22년 12월)</li> </ul>	미제출

검토·확인서 내용은 각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공종별 검토내용 외 특이사항 등이 존재할 경우 위와 같이 추가 자료 작성

## 3.2. 감리자 검토·확인

### 3.2.2. 검토·확인서 첨부 및 확인란 체크



단계	단계명	설명
06	파일추가	파일추가 버튼을 눌러 작성한 검토·확인서 첨부 ※ 검토·확인서가 아닌 타 문서(타 현장 검토·확인서 및 기타 문서 등) 첨부 시 반려 조치 될 수 있음
07	확인란	시공사가 제출한 최신의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였음을 증명(□에 체크)
08	임시저장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

## 3.2. 감리자 검토·확인

### 3.2.3. 검토·확인 후 승인·반려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 / 발주청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감리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감리자)
최종수정 확인일시	2022/11/04 16:14: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파일 첨부 및 확인**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2항
-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㉔
- 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용역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최신의 안전관리계획서 자료 제출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서(신규).pdf (8241 KB)

검토 확인서 ?

검토·확인서 양식

파일추가
선택다운로드
전체다운로드
선택파일삭제
전체파일삭제
목록 초기화

첨부 가능 확장자 : pdf, hwp, PDF, HWP

일시저장
취소

**09**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처리완료**

처리상태	<input type="radio"/> 승인 <input type="radio"/> 반려	처리일자	2022-11-04
반려 사유	<p style="font-size: 10px;">반려시 반려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40px; width: 100%;"></div>		

10

✓ 처리완료

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09	<input type="radio"/> 승인 <input type="radio"/> 반려	- 승인 : 감리자의 검토·확인 단계의 종료 및 [06.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승인] 단계로 진행되어 '발주청 확인중' 상태로 전환 - 반려 : [01.검토의뢰 작성] 단계로 돌아가 '시공사 작성중' 상태로 전환되며, 아래 반려사유를 작성하여야 함
10	<span style="font-size: 24px;">✓</span> 처리완료	상기 승인/반려 선택 후 <span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5px; border: 1px solid black;">✓ 처리완료</span> 버튼을 눌러 감리자 역할 종료 ※ 처리완료 시 검토·확인서 수정 불가

VER 01.03

2023. 10. 25.

# 승인기관 검토의뢰 매뉴얼

2023. 10.



## 4.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 승인기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www.csi.go.kr)의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사, 감리자, 승인기관, 국토안전원, 합동검토위원의 5개 사용자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아래 매뉴얼은 각 권한의 사용자가 본 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모든 검토의뢰 업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수행 가능합니다. 업무 흐름은 아래의 9단계에 따르며, **승인기관의 경우 06단계를 수행**합니다. 상세한 설명은 뒷장 매뉴얼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단계	단계명	설명
06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승인	승인기관 사용자가 시공사 및 감리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 관련 사항 일체를 검토·승인하여 국토안전원에 최종 검토의뢰하는 단계

## 4.1. 승인기관 승인 경로

[CSI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안전관리계획서] → [1·2종 검토의뢰] → [승인이 필요한 공사명 클릭]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 탐당직원님으로 로그인하셨습니다.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사이트맵

Q

결과내 검색
 상세검색 ▾

통합포털	0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수준평가	아차사고	건설사고	위험요소프로파일	현장점검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사용자교육	정보공동활용체계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교육 일정	설계의 검토 설계서(순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검토의뢰 검토결과 제출	안전관리계획서는? 합동검토회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적정성 검토	안전관리수준평가 시스템은? 건설공사대장 평가자료제출 평가결과열람 이의신청 맞출원지원 수준평가 정보공개 안전관리수준평가 통계/분석	아차사고는? 아차사고	사고신고 및 조사는? 건설사고신고대장 건설사고발생신고 사고조사실시 사고사례 사고조사위원회 산업재해조사포 대장	위험요소 프로파일은? 위험요소 프로파일 위험요소 위험성 평가 통계·분석	현장점검은? 현장점검 대상 선정 현장점검 현장점검 현황 자율점검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는? 설계용역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공평가 업무대행 우수건설 사업자 등 선정 평가담당자 메뉴 평가위원 메뉴	교육 소개 수강 신청 수강 내역	정보공동활용체계 안내 공동활용 정보 API 건설안전 데이터 API 인증키 신청 공통데이터 제공 개발자 지원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자료실 건설안전 라이브러리

※ **검토결과 제출**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제출(메뉴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제출 > 검토결과제출)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경및 보완검토의뢰서작성**은 메뉴 1·2종 검토의뢰>처리현황조회>공사명 검색및 선택>의뢰개요의하단의 '변경·보완검토의뢰'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순번	공사명	의뢰기관	시공사	의뢰구분	검토수수료 (부가세포함)	처리단계
03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2,475,000 원	발주청 확인중

◀ ◻ ▶ ▶▶ ( 1 / 1 페이지 ) / 총 1개

70

## 4.2. 시공사 입력 사항 확인

### 4.2.1. 의뢰개요 확인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 / 발주청 확인
<b>01</b>	공사명	매뉴얼 공사		
	인·허가 대상 공사명			
	현장 소재지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충무공동)		지도보기
	공사구분	민간		
	토목·건축 구분	건축 (연면적(m <sup>2</sup> ): 30,000, 최대층수 : 16, 지하층수 : 10)		
	공사기간	2022-10-01 ~ 2025-01-01	공사비	10,000,000,000 원 (일백억 원) (* 부가세포함)
	시공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 현장소장) 건설업체 (업무담당자 : 안전관리자)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 담당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감리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감리자)		
<b>02</b>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2층시설물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b>03</b>	심의 및 검토대상 여부	지하안전평가		
	안전검토보고서 검토결과	해당 없음		
	비고	매뉴얼 제작용 임시 공사 - 작성자 : 현장소장    작성일시 : 2022-08-04 13:31:44		
	진행상태	발주청 확인중		

단계	단계명	설명
<b>01</b>	공사 기본정보 확인	공사명, 현장소재지, 민간/공공 공사 구분, 연면적, 층수, 공사기간, 공사비, 시공사 담당자, 감리자 선정 여부 등 기본 정보 확인 ※ 감리자의 경우 검토의뢰 전 선정되어 CSI에 입력되어야 함 <b>상세1</b>
<b>02</b>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수립대상이 현장 조건에 맞춰 모두 체크되었는지 확인
<b>03</b>	기타 사항 확인	지하안전평가 또는 심의 실시 여부, 설계안전성검토(DFS)여부 및 비고란 등 기타 사항을 확인 <b>상세1</b>

# 상세1

## [의뢰개요 확인 시 주의사항]

### ■ 감리자 선정의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신규 검토의뢰에서 감리자 선정이 필수가 아닌 경우

- (1) 용도변경 공사의 경우
- (2) 신고대상 건축물
- (3) 대상 공사가 **공작물**인 경우
- (4) **해체공사**인 경우

### ■ 지하안전평가 대상의 기준

- (1)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 설계안전성검토(DFS) 대상의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발주청은 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 4.2. 시공사 입력 사항 확인

### 4.2.2.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확인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 / 발주청 확인	
04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점검명(구조물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실시시기				
					1차	2차	3차		
건축물	건축물(지하상가 제외)	2층 시설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제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제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2023-06	2024-03	2024-10				
		초기점검	2024-12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천공기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2022-11	2023-02					
항타 및 항발기		항타 및 항발기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2022-11	2023-02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제작업시				
			2023-08	2024-04	2024-10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갯폼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2024-03	2024-10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023-07	2024-01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2022-12	2023-01					

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04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확인	[의뢰개요]에서 확인했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각각 정기안전점검 대상이며, 점검 횟수 및 실시 시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별표1](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서 확인이 가능 <b>상세2</b>

## 상세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1](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향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갑문, 방파제, 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사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 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4.2. 시공사 입력 사항 확인

### 4.2.3.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 / 발주청 확인

05

전체내용보기

☰ **총괄 안전관리계획** ⌵

건설공사 개요

첨부 파일	1-가. 건설공사의 개요.pdf ( 5.71 KB ) 1-가. 건축 도면.pdf ( 5.71 KB ) 1-가. 구조 도면.pdf ( 5.71 KB )
-------	---

현장특성 분석

첨부 파일	1-나. 현장특성 분석.pdf ( 5.71 KB ) 국토안전관리원_법인등기부등본_0916만기.pdf ( 216.9 KB )
-------	---

현장운영계획

첨부 파일	1-다. 현장운영계획.pdf ( 5.71 KB )
-------	-----------------------------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첨부 파일	1-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pdf ( 5.71 KB )
-------	---------------------------------

☰ 가설공사 <span style="float: right;">⌵</span>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수직구 포함 <span style="float: right;">⌵</span>
☰ 콘크리트공사 (PC 구조 포함) <span style="float: right;">⌵</span>
☰ 건축설비공사 <span style="float: right;">⌵</span>
☰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span style="float: right;">⌵</span>

단계	단계명	설명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border: 2px solid red;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05</div>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탭에서 시공사가 첨부한 안전관리계획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음

### 4.3. 수수료 납부 사항 확인

06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 / 발주청 확인

공사명	매뉴얼 공사		
현장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충무공동)		
공사기간	2022-10-01 ~ 2025-01-01	공사비	10,000,000,000 원
의뢰기관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건설안전과 담당직원 Q)		
시공사	건설업체 (담당자: 현장소장 Q)		
총괄 검토비	1,050,000 원 (VAT 포함 1,155,000 원)		
대상공종	취약공종	공종별 검토비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굴착공-굴착고 20m이상 굴착공사	1,200,000 원	
가설공사	-	0 원	
콘크리트공사 (PC 구조 포함)	-	0 원	
건축설비공사	-	0 원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0 원	
공종 총 검토비	1,200,000 원		
수수료 합계	2,250,000 원 (VAT 별도)		납부완료
결제금액	2,475,000 원 (VAT 포함)		
납부안내	<p>[시공사] 계획서 업로드 -&gt; [시공사] 수수료 납부 -&gt; [국토안전관리원] 납부 확인 완료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 단계로 진행 가능                      ※ 수수료 입금 시 <b>시공사명+공사명키워드</b> (예시 00건설 A11블럭)로 입금하시면 납부현황 파악이 용이합니다.</p> <div style="background-color: #f08080;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10px;">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div>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전화번호	02-123-1234
세금계산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010-1234-5678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manual@naver.com
영수청구 구분	청구	사업자 등록증	시공사 사업자등록증.pdf (5.85KB)
입금 예정일	2022-08-22		

수수료고지서
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div style="background-color: #f08080;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color: white; margin: 0 auto;">06</div>	수수료 납부 확인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탭에서 해당 현장의 수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4.4. 감리자 검토·확인서 확인

07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 / 발주청 확인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2항
  -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감리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감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확인 여부	확인
검토 확인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서(신규).pdf (0.08 M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font-size: 8px;">검토·확인서 양식</div>	
최종수정 확인일시	2022/11/04 16:14:16

단계	단계명	설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4px; color: white; background-color: #e91e63;">07</div>	감리의 검토·확인서 확인	<p>[감리/발주청 확인] 탭에서 감리자가 첨부한 검토·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자의 경우 검토의뢰 전 선정되어 CSI에 입력되어야 함</li> <li>※ 「3.2」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2e7d32; color: white; padding: 2px 5px; border-radius: 3px;">상세1</span> 참고</li> </ul>

## 4.5. 승인기관 승인 및 검토의뢰 완료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처리완료**

승인은 검토 의뢰 요청이며, 별도의 공문 발송이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검토의견 회신 시 **의뢰기관 담당자의 소속부서로 회신**하오니 소속기관 및 부서 변경 시[마이페이지] → [내정보 변경]에서 수정하여 주십시오.  
 ※ 기관 및 부서 오류에 따른 회신 공문 오발송의 책임은 의뢰기관 담당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상태	발주청 확인중
08	<input type="radio"/> 승인 <input type="radio"/> 반려
처리일자	2022-11-04
반려 사유	반려시 반려 사유를 작성해 주세요.
	09 <input checked="" type="button" value="처리완료"/> <input type="button" value="목록"/>

단계	단계명	설명
08	<input type="radio"/> 승인 <input type="radio"/> 반려	- 승인 : 승인기관의 확인 단계 종료 및 [07.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접수] 단계로 진행되어 '검토의뢰 접수' 상태로 전환 - 반려 : [01.검토의뢰 작성] 단계로 돌아가 '시공사 작성중' 상태로 전환되며, 아래 반려사유를 작성하여야 함
09	<input checked="" type="button" value="처리완료"/>	상기 승인/반려 선택 후 <input checked="" type="button" value="처리완료"/> 버튼을 눌러 승인기관 역할 종료

VER 01.01
2023. 10. 25.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컨설팅 매뉴얼

2023. 10.



## 5.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컨설팅

### 5.1. 개요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민원 만족도 개선 및 반복적인 재검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에 대한 컨설팅(이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검토완료 건에 한 해 필요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의문사항, 보완자료 상세 설명 등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CSI를 통해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검토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직접 답변을 남겨 드립니다.

### 5.2. 컨설팅 요청 대상

컨설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검토 차수에 등록된 시공사의 현장대리인, 업무담당자 /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재검토 1차(2023.09.26) ▾

건설기계 임차신청 하러가기		타워크레인 조종사신청 하러가기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공사명	매뉴얼 공사		
인·허가 대장 공사명			
현장 소재지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123번길 40 (충무공동)		📍 지도보기
공사구분	민간		
토목·건축 구분	건축 (연면적(㎡): 30,000, 최대층수: 16, 지하층수: 5)		
공사기간	컨설팅 요청 가능 대상	공사비	1,000,000,000,000 원 (일조 원) (** 부가세포함)
시공사	건설업체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건설업체 (업무담당자: 안전관리자)		
인·허가기관 및 발주청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 담당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감리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자)		
2쪽시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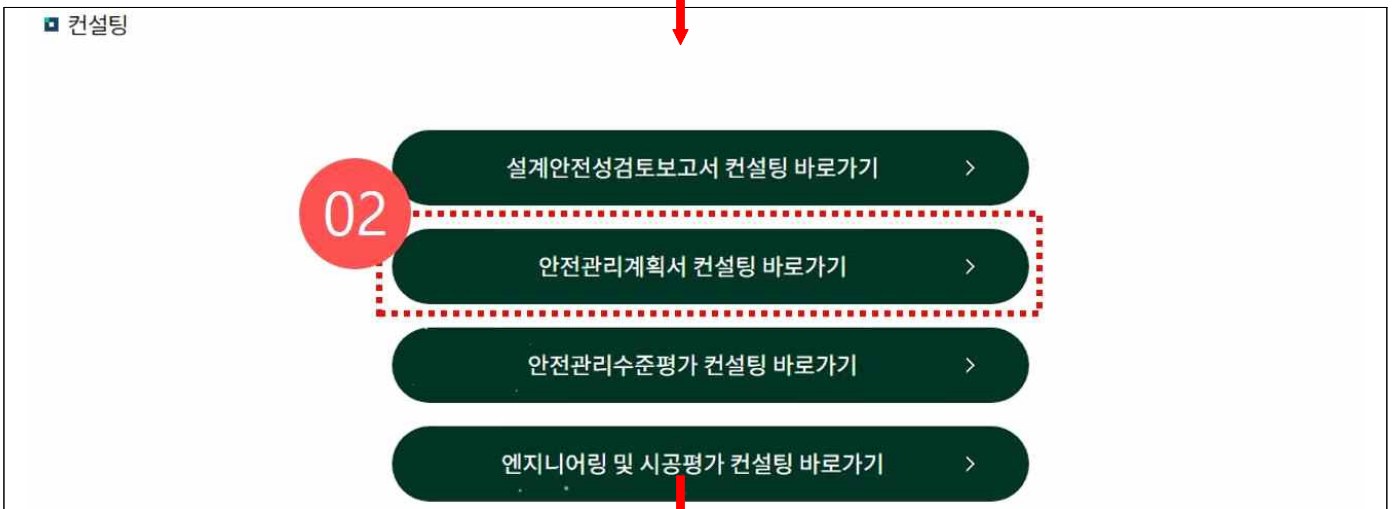
#### 예시

- 1) 신규 및 보완 1차의 시공사 업무담당자가 홍길동인 경우, 홍길동은 신규 및 보완 1차 모두 컨설팅 요청 가능
- 2) 신규 차수의 시공사 업무담당자가 홍길동이고 보완 1차의 시공사 업무담당자가 홍길순인 경우, 홍길순은 신규 차수에 대한 컨설팅 요청이 불가능

### 5.3. 컨설팅 요청 방법

#### 5.3.1. 컨설팅 요청 경로(1)

[CSI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컨설팅신청] → [안전관리계획서 컨설팅 바로가기] → [컨설팅 요청이 필요한 공사명 옆 컨설팅 요청 클릭]



현장소장(건설업체)님이 검토의뢰한 안전관리계획서 목록입니다.

순번	공사명	의뢰기관	시공사	의뢰구분	접수번호	접수완료일자	검토제외 제출예정월	처리단계	컨설팅 요청	컨설팅 차수
1	0000신축공사 테스트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시공사 작성중		-
2			건설업체	신규						-
3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보완(1차)	SD-2023-08463	2023-09-26	2023-10		컨설팅 요청	-
4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SD-2023-08458	2023-09-26	2023-12	검토완료	컨설팅 요청	-
5	테스트2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시공사 작성중		-

A red circle with the number '03' highlights the '컨설팅 요청' button in the table for the third row.

### 5.3. 컨설팅 요청 방법

#### 5.3.1. 컨설팅 요청 경로(2)

[CSI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 [안전관리계획서] → [1·2종 검토의뢰] → [처리현황 조회] → [컨설팅 요청이 필요한 공사명 옆 컨설팅 요청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CSI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links. A menu on the left lists various services, with '안전관리계획서' (Safety Management Plan) selected. Below this, a search filter is applied to '안전관리계획서', showing a list of projects. The table below has columns for '순번' (No.), '공사명' (Project Name), '의뢰기관' (Requesting Agency), '시공사' (Contractor), '의뢰구분' (Request Type),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원료일자' (Receipt Date), '검토제의 제출예정일' (Submission Date), '처리단계' (Processing Stage), '컨설팅 요청' (Consultation Request), and '컨설팅 차수' (Consultation Count). The '컨설팅 요청' button for the 3rd project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labeled '04'.

순번	공사명	의뢰기관	시공사	의뢰구분	접수번호	접수원료일자	검토제의 제출예정일	처리단계	컨설팅 요청	컨설팅 차수
1	0000신축공사 테스트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시공사 가시중		-
2			건설업체	신규						-
3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보완(1차)	SD-2023-08463	2023-09-26	2023-10	검토완료	컨설팅 요청	-
4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SD-2023-08458	2023-09-26	2023-12	검토완료	컨설팅 요청	-
5	테스트2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시공사 가시중		-

### 5.3. 컨설팅 요청 방법

#### 5.3.2. 컨설팅 요청 내용 작성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 /
01
검토의견서

<b>최종검토의견서</b>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margin-bottom: 2px;"> <span style="font-size: 0.8em;">📄</span> 안전관리계획서[매뉴얼 공사] 검토 의견서.pdf (9.5KB)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2px;"> <span style="font-size: 0.8em;">📄</span> 안전관리계획서[매뉴얼 공사] 검토 의견서.pdf (9.5KB)                 </div>
----------------	---

업로드된 검토의견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의견이며, 판정결과 승인서가 아닙니다.  
 판정결과 승인서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발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 최종검토의견서에 업로드된 검토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참고사항  
 유의사항  
 권고사항

**컨설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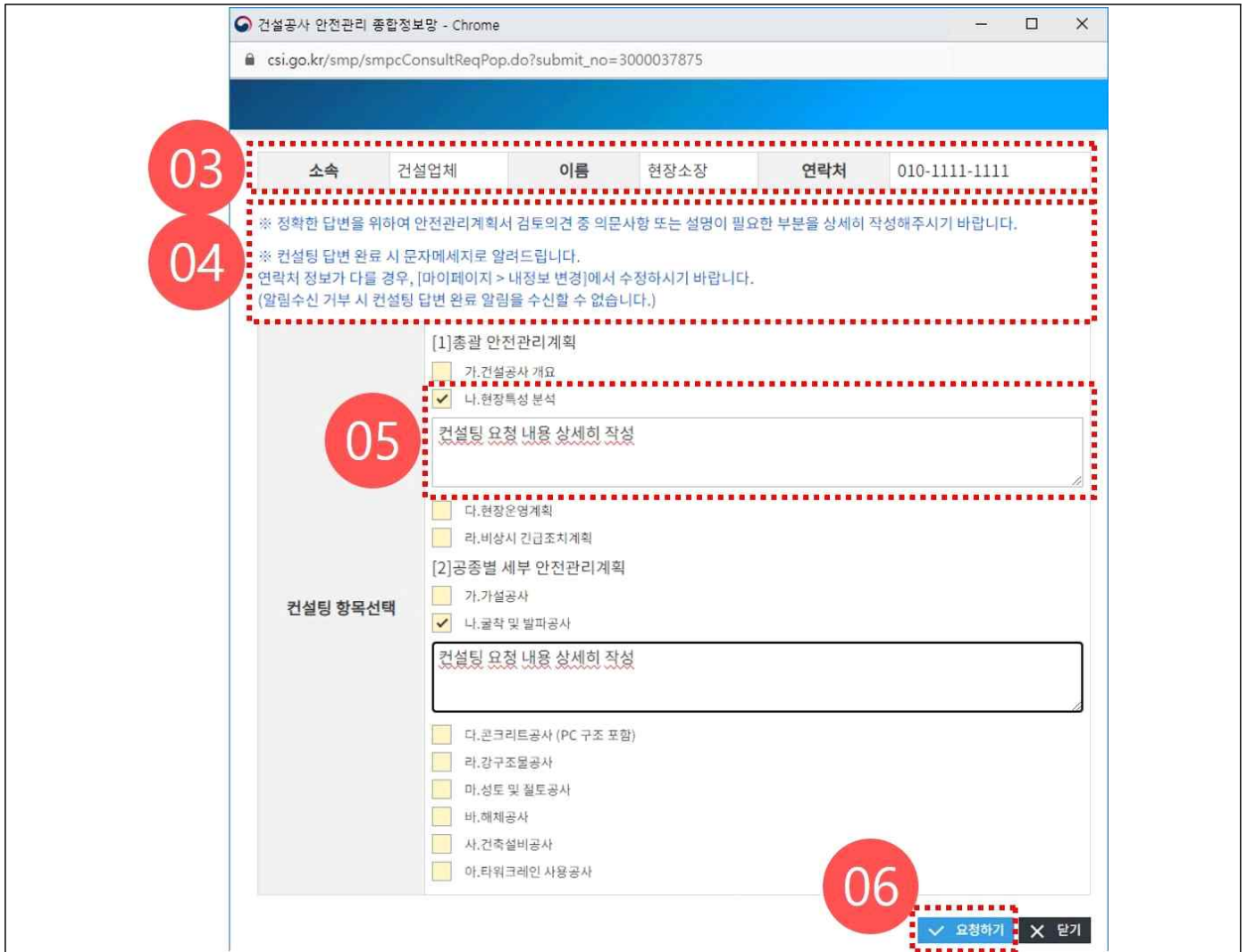
<b>컨설팅 요청</b>	컨설팅 의뢰 내역 없음
---------------	--------------


02
컨설팅 요청하기

단계	단계명	설명
01	검토의견서 메뉴 확인	처리현황에서 컨설팅 요청 클릭 시 해당 건의 검토의견서 메뉴로 이동
02	컨설팅 요청하기	컨설팅 요청하기를 클릭하여 컨설팅 내용 입력을 위한 팝업 생성

### 5.3. 컨설팅 요청 방법

#### 5.3.2. 컨설팅 요청 내용 작성



단계	단계명	설명
03	내정보 확인	본인의 소속, 이름, 연락처를 확인 ※ 변경사항이 있을 시, [마이페이지>내정보 변경]에서 수정 필요
04	안내사항 확인	컨설팅 요청 시 안내사항 확인
05	세부항목 체크 및 컨설팅 내용 작성	- 컨설팅이 필요한 세부 항목 체크 시 내용 입력 박스 생성 - 내용 입력 박스에 컨설팅 내용 작성 ※ 원활하고 정확한 컨설팅을 위하여 반드시 상세히 작성 필요
06		요청하기를 클릭하여 컨설팅 요청 완료 ※ 요청 완료 후 수정 불가하므로 요청 완료 전 확인 필요

### 5.3. 컨설팅 요청 방법

#### 5.3.3. 컨설팅 요청 내용 및 처리단계 확인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 / 발주청 확인	검토의견서
------	-------------	---------	-------------------	-------------	-------

최종검토의견서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계획서[매뉴얼 공사] 재검토[1차] 의견서.pdf (9.5KB)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계획서[매뉴얼 공사] 재검토[1차] 의견서.pdf (9.5KB)
---------	--

업로드된 검토의견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의견이며, 판정결과 승인서가 아닙니다.  
 판정결과 승인서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발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 최종검토의견서에 업로드된 검토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참고사항  
 유의사항  
 사항

**07** 컨설팅 현황

컨설팅 요청	요청 내용	소속	이름	연락처
컨설팅 요청	[1] 총괄 안전관리계획- 나. 현장특성 분석 컨설팅 요청 내용 상세히 작성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나. 굴착 및 발파공사 컨설팅 요청 내용 상세히 작성	건설업체	현장소장	010-1111-1111

**08** 처리현황 조회

접수완료일자	yyyy-mm-dd ~ yyyy-mm-dd	검토제의 제출예정월	yyyy-mm ~ yyyy-mm
처리단계	전체	의뢰차수	전체
공사명	입력	취약공종	전체
		접수번호	SD - 2023 - 00001

**08** 현장소장(건설업체)님이 검토의뢰한 안전관리계획서 목록입니다.

순번	공사명	의뢰기관	시공사	의뢰구분	접수번호	접수완료일자	검토제의 제출예정월	처리단계	컨설팅 요청	컨설팅 차수
1	0000신축공사 테스트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시공사 작성중		-
			건설업체	신규				시공사 작성중		-
3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보완(1차)	SD-2023-08463	2023-09-26	2023-10	검토완료 후 컨설팅 진행중	컨설팅 진행중	
4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SD-2023-08458	2023-09-26	2023-12	검토완료	컨설팅 요청	-

단계	단계명	설명
<b>07</b>	요청 내용 확인	컨설팅 요청 항목 및 내용 확인
<b>08</b>	처리단계 확인	- 컨설팅 요청 완료 시 "검토완료 후 컨설팅 진행중"으로 처리단계 변경 - 컨설팅 답변 완료 시까지 해당 건 컨설팅 요청 불가

## 5.4. 컨설팅 답변 확인

### 5.4.1. 컨설팅 답변 확인

의뢰개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감리 / 발주청 확인
검토의견서

**최종검토의견서**

📄 안전관리계획서[매뉴얼 공사] 재검토[1차] 의견서.pdf (9.5KB)

📄 안전관리계획서[매뉴얼 공사] 재검토[1차] 의견서.pdf (9.5KB)

업로드된 검토의견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의견이며, 판정결과 승인서가 아닙니다.  
 판정결과 승인서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서 발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 최종검토의견서에 업로드된 검토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참고사항  
 유의사항  
 권고사항

01

**컨설팅 현황**

	요청 내용	소속	이름	연락처
<b>컨설팅 요청</b>	[1] 총괄 안전관리계획- 나. 현장특성 분석 컨설팅 요청 내용 상세히 작성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나. 굴착 및 발파공사 컨설팅 요청 내용 상세히 작성	건설업체	현장소장	010-1111-1111
<b>컨설팅 답변</b>	1. 현장특성 분석 컨설팅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굴착 및 발파공사 컨설팅에 대한 답변입니다.			

02

2차 컨설팅 요청하기

단계	단계명	설명
01	답변 확인	컨설팅 요청 내용에 대한 답변 확인
02	2차 컨설팅 요청하기	2차 컨설팅 요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컨설팅 재요청 가능 ※ 요청 방법은 매뉴얼의 「5.3」과 동일함

## 5.4. 컨설팅 답변 확인

### 5.4.1. 컨설팅 답변 완료 시 처리단계 확인

■ 처리현황 조회

접수완료일자: yyyy-mm-dd ~ yyyy-mm-dd    검토제의 제출예정일: yyyy-mm ~ yyyy-mm

처리단계: 전체    의뢰차수: 전체    취약공종: 전체    접수번호: SD - 2023 - 00001

공사명: 입력    **검색하기**

🔔 현장소장(건설업체)님이 검토의뢰한 안전관리계획서 목록입니다.

순번	공사명	의뢰기관	시공사	의뢰구분	접수번호	접수완료일자	검토제의 제출예정일	처리단계	컨설팅 요청	컨설팅 차수
1	0000신축공사 테스트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시공사 작성중		-
2			건설업체	신규				시공사 작성중		-
3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보완(1차)	SD-2023-08463	2023-09-26	2023-10	검토완료 후 컨설팅 완료	<b>컨설팅 요청</b>	1
4	매뉴얼 공사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SD-2023-08458	2023-09-26	2023-12	검토완료	<b>컨설팅 요청</b>	-
5	테스트2	발주청/인허가기관	건설업체	신규				시공사 작성중		-

단계	단계명	설명
03	처리단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설팅 답변 완료 시 "검토완료 후 컨설팅 완료"로 처리단계 변경</li> <li>- 컨설팅 요청 버튼 활성화</li> </ul>

VER 01.03
2023. 10. 25.

# 부 록

2023. 10.



**붙임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1·2종 시설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p>3. 항만</p> <p>가. 갑문</p> <p>나. 방파제, 파 제제 및 호안</p> <p>다. 계류시설</p>	<p>갑문시설</p> <p>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p> <p>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 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 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p> <p>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p>	<p>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 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p> <p>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p> <p>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p> <p>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 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p> <p>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 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p> <p>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p>
<p>4. 댐</p>	<p>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p>	<p>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p>
<p>5. 건축물</p> <p>가. 공동주택</p> <p>나. 공동주택 외 의 건축물</p>	<p>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 미터 이상의 건축물</p> <p>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 역시설 및 관람장</p> <p>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p>	<p>16층 이상의 공동주택</p> <p>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p> <p>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 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 시설</p> <p>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p> <p>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 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p>

<p>6. 하천</p> <p>가. 하구둑</p> <p>나. 수문 및 통문</p> <p>다. 제방</p> <p>라. 보</p> <p>마. 배수펌프장</p>	<p>1) 하구둑</p> <p>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p> <p>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p> <p>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p> <p>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p>	<p>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p> <p>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p> <p>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p> <p>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p> <p>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p> <p>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p> <p>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p>
<p>7. 상하수도</p> <p>가. 상수도</p> <p>나. 하수도</p>	<p>1) 광역상수도</p> <p>2) 공업용수도</p> <p>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p>	<p>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p> <p>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p>
<p>8. 옹벽 및 절토사면</p>		<p>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p> <p>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 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p>
<p>9. 공동구</p>		<p>공동구</p>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10의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4. "철도 역사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붙임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 9. 13., 일부개정]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본조신설 2015. 7. 6.]

**부칙** <제32906호, 2022. 9.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8. 2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구분	작성 기준	제출 기한
1) 총괄 안전관리계획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중·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현장 특성 분석

1)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支障物)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을 포함한다), 지반 조건 [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등을 말한다],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

2)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가) 핵심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나)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사항을 작성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가) 및 나) 외에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 요소 및 위험성을 발굴한 경우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방안

### 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 침하 등에 대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신호수 배치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계획 및 손상·유실·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나)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계획

## 다. 현장운영계획

### 1)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비상시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가)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나)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공사장 상부에서 전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 4)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 5)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 등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1)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 2) 건축공사 중 화재발생을 대비한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단열재 시공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기)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4) 안전성 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1)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타워크레인간 충돌방지계획 및 공사장 외부 선회방지 등 타워크레인 설치·운영계획, 표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하며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각선 방향 등의 구조 부재)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

2) 타워크레인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3)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 운영계획(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장비별 전담 조정사 지정여부 및 조종사의 운전시간 등 기록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임대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자와의 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계획

4)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현장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붙임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퇴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수도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향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갑문, 방파제, 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사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퇴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 시설물 일체화 가설 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 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5** 합동검토회의 Check-List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굴착고 20m 이상)**

- 참 석 자 : 시공사(현장소장) / 흙막이 가시설 책임 설계자
- 회의 준비(검토) 자료 - **check list**(회의 전 아래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

현장에 해당되는 공종별 자료를 취합하여 **1번(도면)과 2~13번 항목 2개의 PDF로 작성** \*  
 (check list 확인)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취약공종>에 업로드  
 \* 굴토 또는 구조 심의/ 지하안전영향성 평가를 받으신 경우, 심의 의견서 추가 첨부 필요  
 (심의 결과로 인해 보완·변경 반영이 완료된 자료 첨부)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누락 시 부적합사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0조 1항 참조)

**건축** : 심의 의견서 또는 지하안전영향 평가서 통합본 첨부 필요

**토목** : 해당 공구(현장)의 심의 의견서 또는 지하안전영향 평가서만 발췌하여 첨부 필요

**check list**

1. 굴착, 흙막이, 발파, 향타 등의 공사개요 및 대지 위치도, 건축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  
 ※ 주변 시설물 및 현장 대지에 대한 회의 시점에서의 사진을 반드시 포함
2. 굴착 및 흙막이 가시설 도면(띠장, 버팀보, 현장타설말뚝, 연결부 세부 등 - 상세도면 일체)  
 ※ 가시설 설치·해체에 따른 시공 순서도 / 가시설 부재 세부 상세도면 / 위험 구간 시공계획, 주의사항
3. 흙막이 가시설(벽체, 부재) 구조 안전성 검토서(input, output 포함)  
 ※ 복공(램프) 구조검토서 / 설계도면(토공 절차, 중장비 위치, 운용 계획을 도면상에 표기) 포함
4. 굴착현장 주변시설물 현황(대지 및 건물) 목록 및 도면  
 ※ 굴착 단면도에 인접 구조물 거리 및 단면(지하층), 기초의 종류 작성, 인접 지하매설물 현황도, 단면도 (종류, 위치, 매설깊이 표기)  
 ※ 인접 시설물 및 매설물 안전점검 계획(계획서 첨부) or 점검자료 첨부
5. 시공순서도 - 굴착 및 해체 순서도면(소단길이, 기울기, 한계 굴착고를 수치화) 작성
6. 굴착 공사 중 사면(비탈면) / 인접 구조물, 지하 영향성 검토 등의 검토서류
7. 건축슬래브 지지(SPS, CWS, DBS 등) 공법 적용 시 구조 계산서, 시공 상세도
8. 지반조사보고서 및 시추주상도
9. 계측기 설치 계획서(측정기준, 허용치), 계측 설치 도면
10. 발파 공사 : 시공 상세도, 시험 발파 계획 / 배수 처리 : 배수량 검토, 영구배수 도면
11. 각 세부공종별(굴착, 흙막이, 발파, 향타, 배수 등)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현장 공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12. 기존 철거 대상물인 경우 규모 및 철거 공종 대상여부를 표시
13. 기타 공사 관련 주요 도면 및 안전시공 상세절차 등(시공 계획서 등)

-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 측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서면자문 일자는 시스템-합동검토회의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대면회의 일자 통보는 국토안전원 담당자가 문자 또는 유선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동바리공)

○ 참 석 자 : 시공사(현장소장) / 동바리 설계 관계전문가(구조기술사)

○ 회의 준비(검토) 자료 - check list(회의 전 아래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

- 현장에 해당되는 공종별 자료를 취합하여 1번(도면)과 2~6번 항목 2개의 PDF로 작성
- ※ 전체 동바리 설치 계획(거푸집, 일반-강관 동바리 등 포함)에 대해 첨부

### □ check list

1. 해당 건축물 대한 건축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 구간별 동바리 설치 위치, 구조 검토 해당 구간을 건축 도면상에 표기
  - ※ 구간별 동바리가 설치되는 슬래브 등의 구조도면을 첨부
2. 타설층 동바리 하부 슬래브(기초 바닥면)에 대한 안전성 검토 의견서
  - ※ 하부층 동바리 보강상세 도면(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및 보강 계획에 따른 목록(list) 작성
  - ※ 특히, TG 보, 슬래브가 시공되는 현장은 본 내용 누락 시 검토 결과가 부적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 동바리 및 거푸집(보, 벽체, 기둥 등) 구조계산서 첨부
  - ※ 현장 전체 동바리 및 거푸집(기둥, 벽체, 현치부, 깊은보 등)의 구조 계산서를 층고, 구조, 형태, 상부 적용하중 차이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
  - ※ 동바리 설치 구간별 층고 및 설치되는 동바리 종류를 비교표로 작성
4. 구조계산을 통한 동바리 및 거푸집의 시공 상세도면(세부 공종별로 수치화하여 작성)
  - 평면도, 입면도, 종, 횡단면도, 각 부분 연결 상세도 등의 설치 상세도
  - 가새 및 수평 연결재 간격 및 배치를 평면(가새방향 포함), 입면, 단면(횡중방향) 등에 표기
  - 동바리에 대한 수평, 수직, 사재 설치상세도
  -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 수평재 배치 상세도
  - 동바리의 상부U-헤드상세도, 하부기초 상세도, 강관비계 연결 이음새 상세도 등
  - ※ 풀임1과 같이 동바리 설치 구간에 대한 배치상세도 추가
5. 콘크리트 타설계획 및 순서도(분리타설 계획, 타설 순서, 펌프카 및 압송관 포함)
  - ※ 펌프카의 위치, 펌프카 타설시 동행 안전대책, 압송관의 설치계획 등 포함
  - ※ TG 보 및 슬래브 구간, 분리타설 계획에 따른 안전시공절차, 타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공 순서도 및 세부 상세도면(벽체 터짐 방지계획 등)을 작성
6.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현장 공법에 맞도록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 측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 회의 일자 통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시스템에 입력 절차가 완료되면, 관리원 담당자가 문자 또는 유선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고층건물)

○ 참석자 : 시공사(현장소장) / 가설 구조물 설계자

○ 회의 준비(검토) 자료 - check list(회의 전 아래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

□ 현장에 해당되는 공종별 자료를 취합하여 1번(도면)과 2~8번 항목 2개의 PDF로 작성 (check list 확인)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취약공종>에 업로드

### □ check list

1. 해당 건축물 대한 건축도면(배치도, 평면도, 주요 입면도 및 단면도 등) - 대상 공종 설치 위치를 건축 도면상에 표기
2. 당 현장의 주요 가설 구조물 계획, 종류 list 작성
3. 2항에 대한 주요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계획, 시공상세도 및 안전성 계산서 첨부 (ex) ACS, GCS, CPB, SWC, 곤도라, 고압배관 관리계획 등 해당 가설 공법 포함)
4. TOWER CRANE, 호이스트 설치·해체 및 운용계획(브레이싱 포함)
5. 외부비계의 계획 시 안전성 계산서 및 시공상세도(고층부, 저층부 구분하여 첨부)
6. 코어 선행공법 적용시 시공순서 및 접합 상세 계획 수립
7. 안전점검계획, 계측계획, 안전점검표 작성 첨부
8. 초고층 안전 영향성 평가를 받으신 경우, 심의 의견서 1부(요약본) 및 수정본 첨부
  - ※ 심의 결과(보완 등)가 완료된 설계 도면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심의 결과가 보완되지 않은 설계도면은 계획 변경으로 재검토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검토 중 부적합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 측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서면자문 일자는 시스템-합동검토회의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대면회의 일자 통보는 국토안전원 담당자가 문자 또는 유선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특수건축물)

○ 참 석 자 : 시공사(현장소장) / 특수건축 대상공종 담당 설계사

○ 회의 준비(검토) 자료 - **check list**(회의 전 아래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

□ 현장에 해당되는 공종별 자료를 취합하여 1번(도면)과 2~11번 항목 2개의 PDF로 작성

### □ check list

1. 해당 건축물 대한 건축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 대상 공종 설치 위치를 건축 도면상에 표기
2. 특수구조 건축물 시공 관련 단계별 시공 상세도면(가설, 이음, 접합, 양중, 용접 등)
3. 특수 건축물 대상 공종의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4. **시공 시 부재 양중 및 운반계획**(분절, 조립, 양중 계획, 교통대책 등) - **도면상 표기**  
 ※ 시공 중 가설 구조물의 시공 상세도(설치, 해체 순서도 포함), 가설 하중, 장비하중에 대한 해당층 하부 슬래브에 대한 구조 검토서
5. **단계별 시공 절차에 따른 시공 중 안전성 검토** 및 시공 순서도(작업 계획) 첨부  
 ※ 면외 좌굴을 포함한 **시공단계별 구조해석** 검토 필요  
 ※ 현장 조립 후 부재 인양 시 구조 해석 자료 첨부 필요  
 ※ **본 내용 누락 시 검토 결과가 부적합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필수적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중장비 인양 능력 및 장비 작업 위치를 도면에 표기, 장비 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 첨부  
 ※ 장비의 작업 제한 조건 및 설치위치 도면 포함
7. 시공 중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검토서(가설벤트 등)** 및 **세부 시공 상세도면** (수치화하여 구체적으로 표현) 첨부
8. 부재 양중 및 조립 시 신호원, 유도원 배치계획 및 작업 통제계획 등 작성
9. 특수 건축물의 공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작성 첨부  
 ※ 특수 거푸집 사용 시 안전성계산서, 시공 상세도  
 ※ 콘크리트 타설 계획 및 장비투입계획, 추락방지대책 등
10.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시공 순서도 및 시공 계획서 첨부
11.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현장 공법에 맞도록 시공 단계별로 작성)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 측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건축물 회의는 시공계획을 중점으로 한 회의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 회의 일자 통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시스템에 **입력 절차가 완료되면** 관리원 담당자가 문자 또는 유선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 합동검토회의 준비자료(특수교량공 - 가설)

○ 참 석 자 : 시공사(현장소장, 공사) / 교량 담당 설계사(가설 설계 포함)

○ 회의 준비(검토) 자료 - **check list**(회의 전 아래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

현장에 해당되는 공종별 자료를 취합하여 **1번(도면)과 2~9번 항목 2개의 PDF로 작성**

### check list

1. 본 현장에 건설되는 교량의 단계별 **주요 설계도면(시공 순서 포함)**, 주변현황도(부대시설 포함), 이에 따른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해당 교량공법 시공 시 적용되는 가설공종(Bent, 워킹타워, F/T, 압출, 부재 양중, 프리캐스트 등)의 안전성계산서 및 안전성계산 결과에 따른 조립 상세도
  - ※ 조립 상세도는 각 부분 연결 상세도, 가새, 수평 연결재 간격 및 배치를 해당 구조물도(평단면도 등)에 표시
  - ※ 가설 Bent, 워킹타워 등의 기초 상세도 및 지반지지력 확인 및 보강방법
3. (상부 공) - 인양, 거치 관련 안전시공절차, 인양 하중 검토, 양중기 지지 기초 안전성 검토
  - ※ 타워크레인, 리프트, 윈치 등의 기초상세 및 각 부분 연결 상세도
4. (하부 공) - 거푸집, 동바리, 철근조립, 콘크리트 치기, 양생 등 각종 공정의 안전관리계획
  - ※ 강재 거푸집 안전성계산서, 슬라이딩폼 인양방법에 따른 안전주의사항 등
5. 교량 기초 시공을 위한 흙막이 및 파일공사(대구경 현장 콘크리트 말뚝 등) 안전관리계획
  - ※ 흙막이 안전성계산서 및 세부 상세도면(벽체, 말뚝, 띠장, 버팀보 등)
6. 교량 공사 중 계측관리 관련 내용(구조물, 흙막이 가시설, 인접 구조물 등)
  - ※ 계측기 설치도, 계측 기준 및 일정, 관리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
7. 자재의 운반경로 및 방법, 운반 기계(선), 제작장 설치(ILM 등)의 안전관리계획
8. 기타 당해 공사 관련 안전성 계산서 및 관련 시공 상세도면(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공정에 대한 자료 작성이 필요)
9.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및 시공 계획서 제출

◎ 제출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 측에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자문회의일자는 시스템→합동검토회의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면회의 일자 통보는 국토안전원 담당자가 문자 또는 유선 통보 드릴 예정입니다.

**붙임6**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수수료 상세 기준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기준안내

**1 적용 개요**

- 관련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 제46조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적용 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 의뢰할 때 적용

**2 검토비용 기준([붙임1] 참조)**

구 분	검토 비용			
1. 총괄안전관리 계획서검토비	○ 대상 : 안전관리계획서(총괄 및 대상시설물별 세부)			
	○ 검토비용 기준			
	총 공사비*	300억 미만	300억~500억	500억 초과
	검토 비용	1,050천원/건	1,250천원/건	1,550천원/건
* 공사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2. 취약공종 안전관리 계획서검토비	○ 대상 :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에 취약공종**이 포함된 경우			
	○ 검토비용 기준 : 취약공종 건당 1,200천원 추가			
	** 취약공종의 대상			
	특수교량	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		
	굴 착 공	굴착고 20m이상 ※원지반 기준 최대 굴착고		
동바리공	슬라브두께 1m이상 or 동바리높이 10m이상(층고 10m이상 포함)			
건 축 물	초고층(50층이상 or 높이200m이상), 특수구조(현수, 입체, 셀, 스페이스 프레임, 막, 트러스, 비정형, PEB)			
**기타 관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공종				
**특허공법, 신기술 등은 취약공종으로 분류하여 합동검토회의 실시할 수 있음				
3.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재 검토비 (공법변경)	○ 대상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후, 현장여건 또는 계획의 공법변경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재검토할 경우			
	○ 검토비용 기준 - 일반공종 : 건당 600천원 - 취약공종 : 건당 1,200천원			

\* 각 항목별 검토비용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을 통해 제출
  -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 1.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안전관리계획서 접수
  -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 → 안전관리계획서제출
  - 3. 바로가기 : <http://www.csi.go.kr/index.do>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본점 )

등록번호 : 138-82-01426

법인명(단체명) : 국토안전관리원

대표자 : 김일현

개업연월일 : 1995년 05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134146-0000051

사업장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충무공동)

본점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충무공동)

사업의종류 : 업태 서비스                      종목 안전점검

발급사유 : 대표자변경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kistec@hometax.go.kr

2022년 03월 15일

## 진주세무서장



고객센터	1588-8788 > 2 > 1
작성자	건설안전관리실

